수시연구 2026-1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김지윤 · 김미주 · 최석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수시연구 2026-1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김지윤 · 김미주 · 최석문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김지윤, 김미주, 최석문**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지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김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전문연구원 공동연구원 최석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연구기간	2026. 5. 1. ~ 2026. 10. 31.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김지윤 연구총괄, 제1장 제1,2절, 제3절 일부, 제2장 제1절 일부, 제2절, 제3절 일부, 제3장 제1절 일부, 제2절 일부, 제3절 일부, 제4장 제1절, 제2절 일부, 제5장
내부연구진	김미주 제1장 제3절 일부, 제2장 제1절 일부, 제3절 일부, 제3장 제1절 일부, 제2절 일부, 제3절 일부, 제4장 제2절 일부 최석문 제2장 제1절 일부, 제3절 일부, 제3장 제1절 일부, 제2절 일부, 제3절 일부, 제4장 제2절 일부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김지원 前지오시스템리서치 전임연구원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 목진용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초빙교수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남 해양환경공단 처장

※ 순서는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해양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수산자원 공급, 기후변화 완화, 휴양과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다. 이러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양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가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해양보호구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양보호구역은 규제 중심의 관리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수용성이 낮고, 생태계 보전의 성과가 지역사회의 편익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2022년「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 해양생태공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새로운 해양공간 관리제도이다. 2025년 12월 최초 4개소가 지정됨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는 도입과 지정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원의 지정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공원의 중장기 관리 방향을 제시할 기본계획과 공원별 관리계획의 수립 근거 및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재정 및 전문 지원, 주민참여와 성과평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공원 조성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리 및 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책 여건과 현행 관리 및 운영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공원의 조성 및 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방안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기지정된 4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간담회,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참석, 전문가 자문 및 해양수산부와의 정책협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의 기본원칙을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설정하고, 기존 보호지역과 연계한 공간관리, 협력 거버넌스, 중장기 계획, 관리사업과 지역상생, 재정 및 전문 관리역량의 다섯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별 관리계획으로 구성되는 법정 계획체계, 국가협의회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리사업의 시행과 주민지원, 재정 및 전문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공원별 관리계획의 표준적인 체계를 제시한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한 구성·운영 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의 중심을 '지정'에서 '관리 및 운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해양연구본부 김지윤 전문연구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최석문 부연구위원과 김미주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쓴 연구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 제언은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 산·학·연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었다.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의견을 주신 법무법인 강남 윤익준 전문위원, (전)지오시스템리서치 김지원 전임연구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목진용 초빙교수, 해양환경공단 김영남 처장, 해양수산부 강성민 사무관과 이광석 사무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세심한 검토와 조언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내외부 심의위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성과가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법령 개정과 기본계획 수립, 공원별 관리체계 구축 등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이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조화를 실현하는 제도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2026년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조 정 희

목차

정책제안 _ i

요약 _iii

Executive Summary _ix

01 서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5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1. 선행연구 결과 8
2. 본 연구의 차별성 10

02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 여건 및 한계_19

제1절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 여건 19
1.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19
2. 관련 법·제도 현황 28
3. 관련 법정계획 및 국가전략 수립 현황 43
4.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기존 보호지역의 공간적 관계 49

제2절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운영 한계 56
1. 분석 개요 56
2. 분야별 제도적 한계 및 개선 수요 57

제3절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63

03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 분석_67

제1절 국내 사례 67
1. 산림청 국가정원 운영 사례 67
2.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 운영 사례 76
3. 국토교통부 국가도시공원 82

제2절 국외 사례 86
1.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86
2. 미국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91
3. 그리스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 96

제3절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02

0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_107

제1절 제도 개선 기본방향 107
1. 기본원칙 및 제도적 성격 107
2. 관리 및 운영 기본방향 108

제2절 제도 개선방안 112
1.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112
2. 국가해양생태공원별 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 127
3.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135

05 결론 및 정책제언_139

제1절 요약 및 결론 139
제2절 정책제언 142

참고문헌 _149

부록 _157

표 목차

〈표 1-1〉 본 연구의 추진체계 ····· 7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 12
〈표 2-1〉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 추진 경과 ····· 21
〈표 2-2〉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신청지(10개소) ····· 22
〈표 2-3〉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안) ····· 25
〈표 2-4〉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지별 추진 현황 ····· 27
〈표 2-5〉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법·제도 현황 ····· 41
〈표 2-6〉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계획 비교 ····· 43
〈표 2-7〉 공원별 주요 보호·관리지역 중첩 및 인접 현황 ····· 55
〈표 3-1〉 정원 유형별 개념 ····· 68
〈표 3-2〉 국가정원 지정 요건 ····· 69
〈표 3-3〉 국가정원 개요 ····· 71
〈표 3-4〉 국가정원운영위원회 기능 ····· 76
〈표 3-5〉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현황 ····· 81
〈표 3-6〉 도시공원과 국가도시공원(신구) 제도 비교 ····· 83
〈표 3-7〉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용도구역 ····· 94
〈표 3-8〉 국가해양생태공원 유사 공원 및 정원 개념 비교 ····· 105
〈표 4-1〉 해양보호구역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 특성 비교 ····· 108
〈표 4-2〉 국가해양생태공원 법·제도 개선 관련 해양생태계법 체계 변경 ····· 113
〈표 4-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구역 및 유형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 114
〈표 4-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변경·해제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 116
〈표 4-5〉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공원자원 조사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 117
〈표 4-6〉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 118
〈표 4-7〉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 119
〈표 4-8〉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 시행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 121
〈표 4-9〉 국가해양생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 124
〈표 4-10〉 기타 법·제도 개선사항 관련 해양생태계법령 개정안 ····· 125
〈표 4-11〉 국가해양생태공원(4개소)과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교 ····· 127
〈표 4-12〉 국가해양생태공원별 관리계획 구성(안) ····· 132
〈표 4-13〉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 수립지침(안) ····· 132

〈표 4-14〉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 136
〈표 5-1〉 국가해양생태공원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 147
〈표 부록-1〉 국가해양생태공원 법·제도 개선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3단 비교표 ·· 157

그림 목차

〈그림 2-1〉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전략(2023.6.) 목표 및 방향 ····· 20
〈그림 2-2〉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 및 예정 구역 ····· 23
〈그림 2-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공간적 범위 ····· 24
〈그림 2-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개념도 ····· 29
〈그림 2-5〉 국가해양생태공원 운영 전략의 주요 내용 ····· 32
〈그림 2-6〉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주요 내용 ····· 46
〈그림 2-7〉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 48
〈그림 2-8〉 가로림만 중복지정 현황 ····· 50
〈그림 2-9〉 호미반도 중복지정 현황 ····· 51
〈그림 2-10〉 신안·무안 중복지정 현황 ····· 52
〈그림 2-11〉 여자만 중복지정 현황 ····· 54
〈그림 2-12〉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 추진 경과 ····· 63
〈그림 3-1〉 정원등록 현황(2025년 말 기준) ····· 70
〈그림 3-2〉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 73
〈그림 3-3〉 국립공원 지정 현황 ····· 77
〈그림 3-4〉 대보초 해양공원 지정 현황 ····· 88
〈그림 3-5〉 대보초 해양공원의 구역계획 예시(Townsville/Whitsunday 관리구역) ·· 89
〈그림 3-6〉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경계 ····· 92
〈그림 3-7〉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용도구역 위치 ····· 93
〈그림 3-8〉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 공간 구획 ····· 99
〈그림 3-9〉 지중해몽크물범 지역 계획의 공간적 범위 ····· 100
〈그림 4-1〉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운영 기본방향 ····· 109
〈그림 4-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의 관계(안) ····· 130

약어 목록

- CBD(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EEC(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EU(유럽연합): European Union
- MPA(해양보호구역): Marine Protected Area
-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NOAA(미국 해양대기청):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 OECM(보호지역 외 효과적인 보전수단):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UN(국제연합): United Nations
- UNEP(유엔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 WWF(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정책제안

▌분석 내용 및 방법

1. 문헌조사와 법령분석을 통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고, GIS 중첩분석을 통해 기존 보호지역과의 공간적 관계 분석

2. 국내(국가정원, 국립공원, 국가도시공원) 및 국외(호주, 미국, 그리스 해양공원)의 유사 제도의 관리 및 운영체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3. 지정 4개소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간담회 및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참석을 통해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개선 수요 파악

4. 전문가 자문 및 해양수산부 정책협의를 통해 공원 관리·운영의 기본방향과 법·제도 개선방안,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 및 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 마련

▌정책제안

1.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정비

- 「해양생태계법」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관련 장(章)을 신설하여 지정 이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원의 구역별 관리, 지정 변경·해제, 관리사업 시행 및 주민지원 등 실질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2. 국가 및 공원별 법정 계획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중장기 관리·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10년)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원별 관리계획(5년)의 법정 수립체계 구축
-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 시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의 연계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핵심구역의 보전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조화

3. 국가·지역 단위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지역 시민단체, 어업인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 지역협의회의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규정하여 국가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4. 관리사업 실행력 및 지원체계 강화

- 공원별 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및 조사·모니터링 등 전문업무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 공원별 관리사업의 이행실적과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공원별 관리계획과 국가 기본계획에 환류하는 체계 마련

요 약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지윤 · 김미주 · 최석문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해양생태관광 수요와 지자체의 해양생태자원 활용 요구 증가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2022년 12월「해양생태계법」개정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가 도입되었고, `25년 12월 최초 4개소 지정 등 정책 추진이 본격화되었음**
  -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정부 국정과제 71번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에 포함되어 국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 중임
-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임**
  - 현행법은 공원 지정과 협의회 설치 등 기본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법정 계획체계와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과 제도적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 여건 및 한계

- **[제도적 성격]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지향하는 광역적 공간관리제도임**
  - 기존 해양보호구역을 핵심으로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을 설정하여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추구함
- **[공간적 특성] 지정 4개소의 GIS 중첩분석 결과, 기존 법정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해역과 육역까지 관리공간이 확대되는 특성을 확인함**
  - 가로림만, 호미반도는 해양보호구역, 신안·무안, 여자만은 연안습지보호지역을 기반으로 공원구역이 설정되었음
  - 일부 공원은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자연공원 등과 중첩 또는 인접하여 관련 보호 및 관리제도 간 연계가 필요함
- **[법·제도적 한계]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공원의 지정·관리 관련 2개 조문만 규정하여, 지정 이후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이 미흡함**
  - 지정 변경 및 해제, 국가 및 공원별 법정 계획체계, 관리사업 시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제도 개선 수요] 지자체 간담회 및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에서 관리주체 간 역할·책임 불명확, 재정·전문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제기됨**
  - 국가, 광역, 기초지자체 간 역할분담과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조사·모니터링 체계 강화, 생태계 보전·복원, 교육·체험 및 지역상생을 연계한 운영방향 정립이 필요함

3.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 분석

- **[국내 사례] 국가정원, 국립공원, 국가도시공원의 법정 계획체계, 관리주체 및 재정지원 등 관리·운영제도를 비교·분석함**
  - 국가정원은 국가에서 지정, 지자체 운영,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따라 공단의 현장관리 등 제도별 관리기능이 분담되어 있음
  - 법정 기본계획을 통한 중장기 관리와 관리사업·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제도별 운영체계에는 차이가 있음
- **[국외 사례] 호주 대보초, 미국 플로리다 키스, 그리스 알로니소스 해양공원의 공간관리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 사례를 분석함**
  - 해양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이용 특성에 따라 구역별 보호수준을 차등화하고, 조사·모니터링에 기반한 적응적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생태계 보전과 관광·어업·교육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연계하고 있음
- **[시사점]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체계 설계를 위한 5대 시사점을 도출함**
  - 국가 정책방향과 공원별 관리를 연계하는 중장기 계획체계 구축 및 국가-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요구됨
  - 기존 보호지역과 연계한 구역별 공간관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가 핵심 관리요소로 도출됨
  - 생태계 보전을 전제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편익 공유를 확대하는 지역사회 상생이 주요 관리 및 운영 방향으로 제시됨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관리·운영 기본방향

- **[기본원칙]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 기본원칙을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설정함**
  - 기존 보호지역의 보전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변 해역과 육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는 방향을 제시함
- **[5대 기본방향] 정책 여건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운영의 5대 기본방향을 제시함**
  - ① 기존 보호지역과 연계한 광역 공간관리체계 구축, ②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협력 거버넌스 확립, ③ 중장기 계획 기반의 체계적 공원 관리, ④ 관리사업의 집행력 확보 및 지역상생 기반 확충, ⑤ 안정적 재원조달 및 전문 관리기반 강화

2) 제도 개선방안

- **[법·제도 개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확대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마련함**
  - 별도 장(章)을 신설하여 구역별 관리, 지정 변경·해제, 법정 계획체계, 협의회 운영 관리사업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제시함
- **[관리계획 수립 지침]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을 마련함**
  - 핵심구역은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준용하고,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은 공원 고유의 관리계획(5년)을 수립하여 연계함

- 현황 및 여건, 관리기본계획, 시설관리, 재원조달, 협력체계, 성과점검 및 환류 등의 표준 구성(안)을 제시함

▪ **[협의회 운영규정]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한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정(안)을 제시함**

5. 정책 제언

▪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 「해양생태계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지정 이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공원별 법정 계획 수립체계 구축**

- 국가 차원의 관리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10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원별 관리계획(5년)을 수립해야 함
-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보호지역 외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과의 연계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지역 단위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

-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공원별 지역협의회의 제도화가 필요함

▪ **관리사업 확대 및 재정·전문 지원체계 구축**

- 조사·모니터링, 보전·복원, 교육·체험, 지역상생 등 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전문기관을 활용한 관리역량 강화 추진이 필요함

▪ **관리성과 평가 및 정책 환류체계 마련**

- 향후 공원별 관리계획의 이행실적과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관리계획과 국가 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함

EXECUTIVE SUMMARY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Jiyoon Kim · Miju Kim · Seok-Mun Choi

1. Background and Purpose

- Rising demand for marine ecotourism and growing local government interest in using marine ecological resources call for a policy approach that balances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with sustainable use.
- The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December 2022 amendment of the Marine Ecosystem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and policy implementation gained momentum with the first designation of four parks in December 2025.
  -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is included in National Policy Task No. 71, “Innovation in Fisheries and Maritime Industries to Revitalize Fishing Villages and

Coastal Economies," and is being pursued as a key national policy agenda.

- However,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parks after designation remains insufficient.
  - The current Act provides only basic matters such as park design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uncil; a concrete management framework, including a statutory planning system and the division of roles among relevant agencies, is needed.
-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propos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sure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and to strengthen the system's institutional effectiveness.

2. Policy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 [Institutional Nature] The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is a broad-scale spatial management system that pursues "sustainable use premised on conservation."
  - With existing marine protected areas at its core, the system designates buffer zones and sustainable use zones to pursue both ecosystem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by local communities.

- [Spatial Characteristics] A GIS overlay analysis of the four designated parks confirmed that the management area extends from existing statutory protected areas to surrounding waters and adjacent land areas.
  - Park boundaries were set based on Marine Protected Areas for Garorim Bay and the Homi Peninsula, and on Coastal Wetland Protected Areas for Sinan-Muan and Yeoja Bay.
  - Some parks overlap with or are adjacent to World Natural Heritage sites, Ramsar Sites, and natural parks, requiring linkages among the relevant protection and management systems.
- [Legal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 current Act contains only two provisions on park designation and management, leaving an insufficient legal basis for post-design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 Legal grounds are lacking for the modific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the national and park-level statutory planning system, and the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projects.
- [Deman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Consultations with local governments and the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Council raised issues such as unclear roles and responsibilities among management bodies and shortages of funding and expert personnel.
  -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division of roles among the central,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and to establish dedicated

organizations, expert personnel, and a stable financial support system.

-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research and monitoring systems and to set an operational direction linking ecosystem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educ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and local co-prosperity.

3. Analysis of Comparable Systems in Korea and Abroad

- [Domestic Cases] The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systems of National Gardens, National Parks, and National Urban Parks, including their statutory planning systems, management bodies, and financial support.

- Management functions are divided differently across systems: National Gardens are designated by the state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while for National Parks the state formulates policies and plans and a public corporation carries out on-site management.

- While all have legal grounds for mid- to long-term management through statutory master plans as well as for management projects and financial support, their operational structures differ.

- [International Cases] The study analyzed spatial managemen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stralia), the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 (USA), and the National Marine Park of Alonissos (Greece).

- These marine parks differentiate protection levels by zone according to ecological value and use characteristics, and operate adaptive management systems based on research and monitoring.
- They operate consultative bodies involving local residents, fishers, and experts, linking ecosystem conservation with sustainable uses such as tourism, fisheries, and education.

▪ [Implications] Five key implications for desig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system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were derived from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 analyses.

- A mid- to long-term planning system linking national policy direction with park-level management, along with a clear division of rol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 Zone-based spatial management linked to existing protected areas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involving diverse stakeholders emerged as core management elements.
- Community co-prosperity, which expands resident participation and benefit-sharing on the premise of ecosystem conservation, was identified as a key direction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4.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1) Basic Direction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 [Basic Principle] “Sustainable use premised on conservation” was established as the basic principle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 The study proposes a direction that maintains the conservation value of existing protected areas while promoting sustainable use of surrounding waters and land areas and co-prosperity with local communities.
- [Five Basic Directions] Based on the policy conditions and the case analyses, five basic directions for park management and operation are proposed:
  - ① Establishing a broad-scale spatial management system linked to existing protected areas; ②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clearly defin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③ Systematic park management based on mid- to long-term plans; ④ Ensuring the implementation capacity of management projects and expanding the foundation for local co-prosperity; ⑤ Securing stable funding and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management base.

2)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A draft amendment to the Marine Ecosystem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was prepared to expand the legal basis for post-design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parks.
  - A new separate chapter is proposed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zone-based management, modification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the statutory planning system, council operation, management projects, and support for residents.
- [Management Plan Guidelines] Draft Guidelines for Establishing Management Plans for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were prepared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k.
  - Core zones apply the existing marine protected area management plans mutatis mutandis, while buffer zones and sustainable use zones are covered by a park-specific management plan (5-year) linked to them.
  - A standard structure is proposed, covering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basic management plans, facility management, funding, cooperation systems, and performance review and feedback.
- [Council Operating Regulations] A revised draft of the Regulations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Council was proposed, specifying the council's functions, composition, and operating procedures.

5. Policy Recommendations

- Improving laws and institution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 Through amendment of the Marine Ecosystems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 and revision of its subordinate statutes, the legal basis for post-designa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should be established and institutional effectiveness secured.

- Establishing a national and park-level statutory planning system

- A national Master Plan (10-year) setting out management goals and strategies should be formulated, followed by park-specific Management Plans (5-year)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 Consistency with existing marine protected area management plans should be ensured, and potential linkages with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s) should be reviewed.

- Strengthen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 Operating standards for the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 Council should be improved, and park-level regional councils should be institutionalized.

- Expanding management projects and building financial and expert support systems

- Management projects—such as research and monitoring,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education and experience programs, and local co-prosperity—should be expanded, and management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stable financial support and the use of specialized institutions.

- Establishing a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policy feedback system

-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al performance of park-specific management plans should be evaluated, and the results reflected in the next management plans, the national Master Plan, and relat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달성하는 방향으로 보호지역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목표 14를 통해 해양과 연안 생태계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제시하였다.[1]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상과 해양의 30% 이상을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외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으로 보전 및 관리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특히 이 프레임워크는 보호지역의 면적 확대뿐 아니라 효과적이고 공평한 관리, 지역사회의 권리 존중, 보전 목표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강조하고 있다.[2]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보호지역을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태계 보전과

1) A/RES/70/1
2) CBD/COP/DEC/15/4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갯벌생태체험과 해양생태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자원 활용 요구가 확대되면서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2023년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으며,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은 2024년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과 2025년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다. 이어 2025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최초로 4개소를 지정하면서 제도 이행이 본격화되었다. 공원 지정 이후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협의체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제도 도입과 최초 지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공원의 지정과 관리, 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전문 관리조직, 재정지원, 주민참여 및 공원 운영평가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 게다가 최초 지정된 4개 공원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등 조성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관리·운영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는 데에는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 경험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국내 국가정원과 국립공원, 해외 해양공원 등은 제도별 특성에 따라 중장기 계획체계, 전문 관리기관, 협력 거버넌스, 재정

지원 및 성과평가 등을 활용하여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관련 관리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정 중심의 제도를 관리·운영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와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연구 목적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해양보호구역이나 연안습지보호지역을 핵심으로 하면서, 주변 해역과 육역까지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포괄하는 광역적인 공간관리제도이다. 이에 따라 하나의 공원 안에 여러 보호제도가 중첩되거나 인접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게 된다. 또한 공원별로 생태적 특성과 지역여건이 다르므로, 국가 차원의 공통된 관리원칙과 공원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관리 수단이 요구된다. 특히 기존 보호지역의 보전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사회 상생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관리·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공원별 관리를 연계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공원관리계획 수립 지침(안),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해양생태공원, 해양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책 여건과 관리·운영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해양생태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 법정계획 및 국가전략의 수립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어 최초 지정된 4개 공원을 대상으로 기존 법정 보호지역과의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회와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추진 거버넌스, 계획 및 법·제도 기반, 재정 및 인력, 사업 추진 및 운영 방식 등 분야별 제도적 한계와 개선 수요를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산림청의 국가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립공원, 국토교통부의 국가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근거 법률과 제도 개요, 지정 현황 및 관리체계, 위원회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다. 국외 사례로는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미국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그리스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을 대상으로 구역별 공간관리, 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참여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체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인 관

리·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관리·운영의 5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에 관한 별도 장(章)을 신설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공원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체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인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연구, 공간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현장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정책협의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제도의 추진 현황과 관리·운영 여건을 분석하였다. 근거 법령인 「해양생태계법」 및 하위법령,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등 정책자료와 관련 법정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국내외 선행연구 22편을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GIS 기반 중첩분석을 통해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기존 보호지역 간의 공간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2025년 12월 최초 지정된 4개의 공원 구역 경계를 해양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세계자연유산 등재구역, 국립·도립공원의 해상구역 등 법정 보호지역과 중첩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천연기념물, 잘피 분포지역, 점박이물범 이동경로 등 주요 생태자료를

함께 분석하여 공원별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국내외 유사 제도에 대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의 국가정원, 국립공원, 국가도시공원과 국외의 호주, 미국, 그리스 해양공원을 대상으로 계획체계, 관리주체, 재정지원,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넷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문헌연구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상의 한계와 제도 개선수요를 파악하였다. 2026년 6월 1일 최초 지정 4개소 관할 광역·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한 의견수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를 청취하였다. 또한 같은 해 6월 12일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제1차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에 참석하여 공원의 관리·운영 방향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섯째, 전문가 자문과 해양수산부 정책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법·제도 개선안과 관리·운영 방향을 점검하였다. 또한 과제 제안 부처인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와 정기적인 정책협의를 실시하여 주요 정책 현안과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표 1-1〉 본 연구의 추진체계

연구방법	연구내용	정책협의 내용
문헌연구 선행연구 검토 정책협의회	국가해양생태공원 도입 배경 및 법·제도 개선 수요 파악	정책현안 및 법·제도 개선 방향 협의
문헌연구 법률분석 GIS 중첩분석 지자체 의견수렴 국가협의회 참석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 여건 및 한계 분석	지자체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수요 청취
문헌연구 사례분석	국내외 유사 제도 운영 사례 분석 (한국, 미국, 호주, 그리스 등)	-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운영 기본원칙 및 기본방향 설정	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 환경공단 등 현안 청취
전문가 자문 정책협의회	국가해양생태공원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제도 개선안의 타당성 및 정책화 방안 협의
	결론 및 정책제언	

자료: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 해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유사 제도의 지정·관리·운영에 관한 국내 연구와 해양보호구역의 거버넌스, 공간관리 및 관리효과성에 관한 국외 연구 등 총 22편의 주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검토한 연구는 주요 주제와 연구 내용에 따라 제도 도입 및 관리전략, 자연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태,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참여, 공간관리 및 과학적·적응적 관리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1) 제도 도입 및 관리 전략 연구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2025)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기본 개념과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지정계획(안)을 마련하였다. 박성욱·이주아(2021)는 국내외 유사사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국가해양정원의 개념과 조성·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연구하였으며, 조봉운·이제이·유예나(2017)는 가로림만의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본구상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 및 유사 제도의 개념 정립과 지정 및 조성, 기본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자연공원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태 연구

김재은(2022)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해상·해안형 자연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안동만

외(2010)는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양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용도지구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미주 외(2025)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통합관리 거버넌스와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육근형 외(2016)는 해상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체계를 비교하여 보호·관리제도 간 연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해양공간 및 보호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 제도 간 연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참여 연구

강은주 외(2020)는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의 협력 과정을 분석하여 이해관계자 간 수평적 거버넌스의 형성과 협력이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갖는 의미를 제시하였다. 국외에서는 Oikonomou & Dikou(2008)와 Trivourea et al.(2011)이 그리스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수용도와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연구는 해양생태계 보전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경제적 편익과 관리과정의 참여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지속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D'Anna et al.(2016)은 이탈리아 에가디 군도 해양보호구역의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공동관리와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 관리주체 간 역할 및 집행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Jones et al.(2024)은 해양보호구역의 관리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규제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 소통, 지식 공유 및 이해관계자 참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상호 연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보호지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협력체계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4) 공간관리 및 과학적·적응적 관리 연구

Day(2002)는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해양공원의 구역화(Zoning) 사례를 통해 생태적 특성에 따른 공간 구획과 이해관계자 참여, 명확한 관리기준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McCook et al.(2010)은 대보초 해양공원의 보호구역 네트워크와 관리성과를 분석하여 과학적 모니터링과 평가에 기반한 적응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dgar et al.(2014)은 전 세계 87개 해양보호구역을 분석하여 채취 금지, 규제 집행, 보호기간, 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리적 격리성 등 보전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Douvere & Ehler(2011)는 해양공간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과 평가 결과를 후속 계획 및 관리방식의 조정에 반영하는 환류체계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Di Cintio et al.(2023)은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명목상의 보호구역(Paper Park)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 관리역량 및 지역사회 참여 등 사회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호지역의 지정 자체보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와 지속적인 평가·환류가 실질적인 보전성과 확보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제도 도입과 지정·조성, 기존 보호지역의 관리체계, 거버넌스 및 공간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최초 지정 이후 실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정 계획체계와 관리주체별 역할분담, 관리사업 및 지원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목표, 연구대상 및 범위, 연구 방법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연구 목표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유사 제도의 도입 및 지정·조성, 보호지역의 관리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 본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관리·운영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실질적인 이행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관리·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과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 등 구체적인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둘째, 연구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개별 보호구역이나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향을 검토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2025년 최초 지정된 4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존 보호지역과의 공간적 관계, 관련 법·제도 및 계획체계, 관리주체 간 역할분담, 관리사업과 재정·전문지원 등 지정 이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연구 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는 문헌 및 법령 검토와 국내외 유사 제도 사례분석에 더하여 최초 지정된 4개 공원과 기존 보호지역 간 GIS 중첩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참석, 전문가 자문 및 해양수산부 정책협의 등을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분석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관리·운영상의 한계와 개선 수요를 구체화하고, 연구 결과를 법·제도 개선안과 관리계획 수립 지침 등에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처럼 본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방안과 실행수단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 1-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	• 과제명: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 연구자(연도): 해양수산부 (2025) • 연구목적: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관리방향, 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부문별 관리전략 및 사업 범위 제시	• 문헌조사 • 전문가 자문 • 지자체 간담회	• 국내외 유사 정책 및 제도 분석 •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 개념 및 원칙 방향 제시 • 국가해양생태공원 여건 분석 및 부문별 관리전략 마련 • 지자체 수요조사 및 평가, 지정계획(안) 마련 • 관리·운영 방안 및 정책제언
2	• 과제명: 국가해양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 국내·외 해양정원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박성욱·이주아 (2021) • 연구목적: 국가해양정원 개념 정립 및 조성·관리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 정책 및 법률 검토	• 해양정원 관련 유사사례 및 법령 검토 •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검토 요소 •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3	• 과제명: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안) 구상 • 연구자(연도): 조봉운·이제이·유예나(2017) • 연구목적: 가로림만 해역의 생태·경관 자원을 활용한 국가해양정원 조성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마련	• 문헌 분석 • 대상지 조사 • 국내외 사례 분석 • 기본구상 및 계획 수립	• 국가해양정원의 개념 정립 • 국가해양정원 조성방안 제시
4	• 과제명: 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방안 연구(국립공원 주민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자(연도): 박용하·변병설 (1999) • 연구목적: 국립공원 관리에 있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제도 및 정책 분석 • 현황 조사	• 국립공원지정현황 및 주민실태와 문제점 • 국립공원 주민민원 및 관리실태 분석 • 사례연구 • 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와 주민지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환경친화적 관리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원 정책의 추진방향
5	• 과제명: 섬과 바다를 기반으로 한 자연공원 관리 방향: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례 • 연구자(연도): 김재은(2022) • 연구목적: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해양생태계 조사·모니터링, 관리체계 개선, 지역사회 협력 등 해상·해안형 특성을 반영한 관리 방향을 제시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자연공원 기본계획 분석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현황 •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관리방향 제시
6	• 과제명: 지역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과정 • 연구자(연도): 강은주외(2020) • 연구목적: 지역 해양보호구역 관리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형성·확장되는 협력 과정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참여와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규명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심층면접	•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협력과정 분석 • 공동의 이해 도출·성과 공유·신뢰 구축 등 협력 메커니즘 및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탐색 •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보호구역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 실현 가능성 제시
7	• 과제명: 생태공원의 조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향 • 연구자(연도): 김아연(2024) • 연구목적: 생태공원의 법적 근거와 제도 체계를 분석하고, 조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향 제시	• 법·제도 문헌 분석	• 법제 현황 및 한계 분석 • 법 간 정합성 및 체계성 검토 • 생태공원 법적 위상 정립 • 조례 및 기준 개선 방향 제시 • 운영·관리 제도 개선안 도출
8	• 과제명: 해상·해안 국립공원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안동만 외(2010) • 연구목적: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양 특성을 반영한 관리 개선방안 도출	• 문헌조사 • 현장 조사 및 사례분석 • 전문가 인터뷰	• 관리현황 및 문제점 진단 • 해양특성 기반 관리 한계 분석 • 용도지구·관리체계 개선 방향 제시 •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관리 방안 도출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9	• 과제명: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김미주 외 (2025) • 연구목적: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태 진단 및 효과적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도출	• 문헌연구 • 사례분석 • 심층면접 • 전문가 자문 • 법·제도 분석	• 국내외 제도 및 관리현황 분석 • 관리 문제점 및 격차 진단 • 관리 원칙 및 체계 정립 • 통합관리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시 • 제도 및 정책 개선안 도출
10	• 과제명: 해상에 설정된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 방안 • 연구자(연도): 육근형 외 (2016) • 연구목적: 해상에 설정된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의 제도적 기반 및 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보호구역 거버넌스를 반영하여 통합적 관리체계 정비 방안 마련	• 문헌조사 • 국내외 사례 분석 • 전문가 자문 및 면담	• 국내외 해양보호구역 및 공원구역 제도 분석 • 해양보호구역의 특성 및 거버넌스 구조 분석 •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 간 관리체계 비교 및 한계 도출 • 용도지구 기반 관리방안 제시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도출 • 공원구역-해양보호구역 연계 관리 전략 제시
11	• 논문명: Integrating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t the National Marine Park of Alonissos, Northern Sporades, Greece: Perception and Practice • 연구자(연도): Oikonomou & Dikou(2008) • 연구목적: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 설립 13년 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수용도 및 만족도를 평가	• 이해관계자(어민, 관광운영자, 호텔/숙소 소유자, 정부 기관, 비정부 기구, 학생, 국내외 관광객 등) 개인 인터뷰와 설문 조사	• 국가해양공원에 대한 초기 긍정적 태도가 경제적 기대 실현 부족으로 감소 • 지역 이해관계자와 정부 기관 간의 사회경제적 혜택 인식 차이 • 관광객들은 국가해양공원이 알로니소스 섬의 주된 매력이 아니며, 평온함과 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에코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인식 • 국가해양공원의 보존 및 개발 통합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 계획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국가 정책 강조
12	• 논문명: People and the Mediterranean Monk Seal(Monachus monachus): A Study of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the National Marine Park of Alonissos, N	• 사회영향평가 (Social Impact Assessment) • 이해관계자(정부, NGO, 지자	• 몽크씰 보전 목표는 대체로 달성되었으나 지역 주민들은 공원으로 인한 실질적 사회·경제적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지 못함 • 관리체계에 지역사회 참여가 미흡해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orthern Sporades, Greece • 연구자(연도): Trivourea et al.(2011) • 연구목적: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이 지역사회에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체, 지역단체 등) 예비 반구조화 인터뷰로 핵심 주제 도출 • 주민 및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 • 인구통계, 관광, 금융 자료 보완	갈등(특히 어업 분야)이 지속 • 관리기구의 투명한 소통 강화·지역 참여형 의사결정 도입 및 지역 이익 연계 프로그램 마련하는 해결책 필요
13	• 과제명: The MPA Guide: A framework to achieve global goals for the ocean • 연구자(연도): Grorud-Colvert et al.(2021) • 연구목적: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단계, 보호수준, 성공조건, 기대성과의 4요소로 분류하는 과학 기반 정책 프레임워크 제시	• 문헌조사 • 개념적 프레임워크 개발	• 해양보호구역을 지정단계·보호수준·성공조건·기대성과의 4요소로 분류하는 MPA Guide 프레임워크 제시 • 단순 지정을 넘어 실질적 관리와 이행의 중요성 강조 및 국제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14	• 논문명: Marine Prosperity Areas: a framework for aligning ecological restoration and human well-being using area-based protections • 연구자(연도): Aburto-Oropeza et al.(2025) • 연구목적: 보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동시에 증진하는 지역기반(Area-based) 보호 모델 제시	• 문헌조사 • 종합·개념적 프레임워크 제안 • 사례 비교·정책 분석	• 생태복원과 인간복지(생계·관광 등)를 통합하는 설계원칙 제시 • 보호구역과 인접지역의 역할 분담 및 관리 조정 방안 설명 • 성과지표(생태·사회·경제)를 통한 다목적 평가 체계 제안
15	• 논문명: Zoning – Lessons from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 연구자(연도): Day(2002) • 연구목적: 대보초 해양공원 구역화 사례에서 교훈 도출 및 적용 방안 제시	• 사례연구(정책 문서·관리보고서 분석) • 경험적 평가	• 구역화는 생태보전과 지속이용을 조화시키는 핵심 도구임 • 이해관계자 참여와 명확한 규칙이 성공적 구역화의 요인 • 구역 배치·크기·연결성 등 설계상 고려사항 정리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16	• 논문명: Adaptive management of the Great Barrier Reef: A globally significant demonstration of the benefits of networks of marine reserves • 연구자(연도): McCook et al.(2010) • 연구목적: 보호구역 네트워크와 적응적 관리가 생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장기 모니터링 데이터·사례분석·종합평가	• 네트워크 배치(대표성·연결성)가 복원력 향상에 기여 • 적응적 관리(모니터링–피드백)가 관리 효율성 제고에 필수 • 관리 성과는 규제뿐 아니라 집행·지역 참여에 의해 좌우됨
17	• 논문명: Global conservation outcomes depend on marine protected areas with five key features • 연구자(연도): Edgar et al.(2014) • 연구목적: 해양보호구역 효과성을 결정하는 핵심 특징 규명	• 전 지구적 데이터셋 분석(메타분석적 접근)	• 효과적 해양보호구역은 충분한 크기·규제 강도·연속성·국가적 관리·집행을 갖춤 • 단순 지정만으로는 성과가 미흡하고 실행이 중요 • 설계·관리·사회적 지지 통합 필요
18	• 논문명: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adaptive maritime spatial planning • 연구자(연도): Douvere & Ehler(2011) • 연구목적: 해양공간계획에서 모니터링·평가의 역할과 구현 방안 제시	• 이론적 논의 • 사례검토	• 모니터링은 적응적 계획의 핵심 사이클(수행–평가–조정)에 필수 • 지표 선정, 데이터 관리, 기관협력 구조 필요성 강조 • 모니터링 결과를 의사결정에 연결하는 절차 제안
19	• 논문명: Incentive diversity is key to the more effective and equitable governance of marine protected areas • 연구자(연도): Jones et al.(2024) • 연구목적: 해양보호구역 거버넌스에서 인센티브 다변화가 효과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규명	• 사례비교 • 정책분석 • 이론적 통합	• 재정·규범·사회적·문화적 인센티브의 복합적 조합 필요 • 단일 인센티브(예: 규제)만으로는 갈등·비효율 초래 • 인센티브 설계 시 지역 맥락 및 수혜자 분배 고려 권고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20	• 논문명: Avoiding “Paper Parks”: A Global Literature Review on Socioeconomic Factors Underpinning the Effectiveness of Marine Protected Areas • 연구자(연도): Di Cintio et al.(2023) • 연구목적: 명목상의 보호구역이 되지 않기 위한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검토	• 체계적 문헌 검토	• 재정·거버넌스·지역참여·대체생계가 해양보호구역 실효성 좌우 • 초기 설계단계에서의 사회경제적 분석 필요성 강조 • 관리역량 강화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수
21	• 논문명: Integrating scientific guidance into marine spatial planning • 연구자(연도): Rassweiler et al.(2014) • 연구목적: 해양공간계획에 과학적 근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 제시	• 모델링·사례분석·정책연결 방법론 제안	• 과학은 목표설정·대안평가·우선순위 결정에 핵심적 역할 • 명확한 의사소통·가중치 설정·불확실성 처리 방법 필요 • 참여적 절차와 과학적 도구의 병행 사용 권장
22	• 논문명: Governance analysis in the Egadi Islands Marine Protected Area: A Mediterranean case study • 연구자(연도): D’Anna et al.(2016) • 연구목적: 에가디 군도 해양보호구역의 거버넌스 구조와 성과 분석을 통한 교훈 도출	• 거버넌스 분석·이해관계자 인터뷰·현장자료 검토	• 다층 거버넌스(지역–국가–유럽) 간 조정의 중요성 확인 • 공동관리·지역참여가 갈등완화와 규범준수에 기여 • 제도적 명료성·자원배분·집행체계 개선 필요
본 연구	•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해양생태공원’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원활한 이행과 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도출에 중점을 둔 연구	• 문헌연구 • 법률분석 • 전문가 자문 • 해수부 정책협의회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자료: 저자 작성

02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 여건 및 한계

제1절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 여건

1.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현황

1) 제도 도입 배경 및 경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중심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호주의 대보초 해양공원, 유럽의 와덴해 등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롭게 반영한 관리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립공원과 산림청의 순천만, 태화강 국가정원 등 자연환경 보전과 국민 이용을 연계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안과 해양에서도 최근 갯벌생태체험 등 해양생태관광 수요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자원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3)]

3) 관계부처합동(2025.12.2.), p. 2.

이러한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계의 합리적인 이용과 지속가능한 보전 체계 확립을 위해 2022년 12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어 2023년 6월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우수한 해양생태계, 모두가 누리고 보전하고'를 목표로 4대 기본방향과 광역화·연결성·생태적 건강성·지역상생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2-1〉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전략(2023.6.) 목표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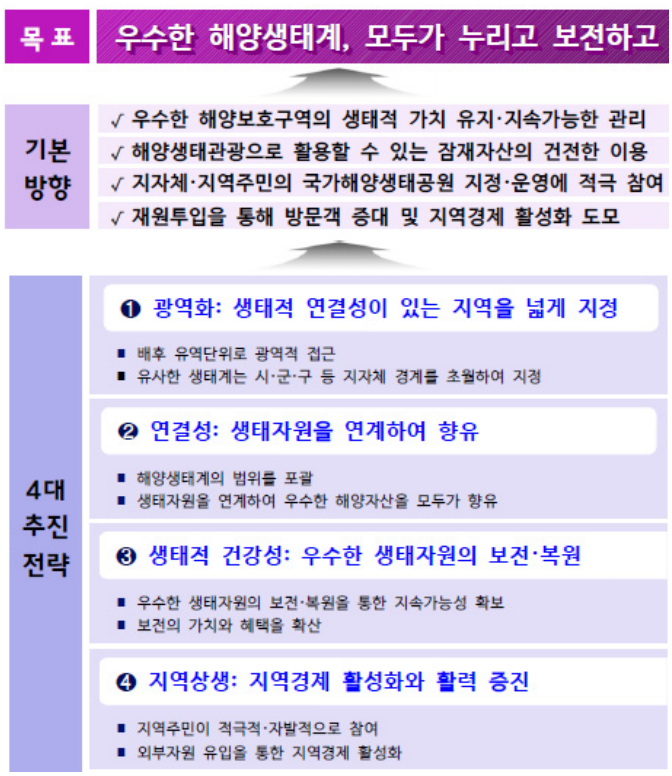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2023), p. 14.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이후 국가 해양생태정책의 주요 과제로 반영되었다. 2024년 4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에는 '전략3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의 추진과제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 포함되었다.[4] 또한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1번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에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이 반영되었다.[5]

이러한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2025년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이어 같은 해 12월 31일 국내 최초로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소를 지정하면서 제도 이행이 본격화되었다.

공원 지정 이후에는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체계도 마련되었다. 2026년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구성·운영 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위원 선정 등을 거쳐, 6월 12일 제1차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원의 관리·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표 2-1〉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 추진 경과

시기	내용
2022.12.	•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2023.6. 시행)
2023.6.	•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전략 발표
2024.4.	•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발표(전략3.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의 추진과제로 포함)
2025.9.16.	• 정부 국정과제 확정(71번에 국가해양생태공원 포함)
2025.12.2.	•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확정(경제관계장관회의)
2025.12.31.	• 국내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소 지정 완료

4) 해양수산부(2024.4.), p. 7.
5) 대한민국정부(2025), p. 136.

시기	내용
2026.3.24.~4.3.	•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및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의견 조회
2026.4.23.~4.28.	• 협의회 민간위원 추천
2026.5.13.	• 협의회 민간위원 선정
2026.6.12.	• 제1차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개최

자료: 해양수산부 (2026.6.12.) p. 14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현황[6)]

해양수산부는 2022년 10월 「해양생태계법」 개정 이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희망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개 광역 시·도에서 총 10개소의 지정을 신청하였다.

〈표 2-2〉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신청지(10개소)

2024년 12월 기준
단위: 면적(㎢)

지역	공원명	공원면적 (신청기준)	해양보호구역 면적		
			합계	현재	예정지
충남	가로림만	112.63	92.04	92.04	-
충남	보령갯벌	126.48	10.93	5.23	5.7
전남	신안·무안	1,142.86	1,142.86	1,142.86	-
부산	에코 블루마린	628.37	349.03	0.725	348.3
전남	여자만 1(순천·보성)	61.92	61.92	61.92	-
전남	여자만 2(여수·고흥)	38.81	38.81	38.81	-
경북	울릉도	112.28	39.44	39.44	-
인천	인천	394.00	83.41	68.4	15.01
경북	호미반도	71.833	71.77	71.77	-
강원	화진포	5.10	105	-	105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12.2.)(검색일: 2026.9.5.), p. 5.

6) 관계부처 합동(2025.12.2.)(검색일: 2026.9.5.), pp. 5-7.

이 가운데 해양자산의 보전 가치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등 4개소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우선 지정하였다.

〈그림 2-2〉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 및 예정 구역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12.2.)(검색일: 2026.7.6.), p.5.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법정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해역과 육역을 연계하는 핵심보전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의 3단계 공간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핵심보전구역은 기존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그 주변 해역은 완충구역, 인접 육역은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구분하여 보전과 이용을 공간적으로 연계하도록 하였다. 완충구역에서는 해양환경 조사·연구와 해역관리 등을 추진하고, 지속가능이용구역에는 관찰시설, 보전관, 학습원 등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용시설이 집약되는 공간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2-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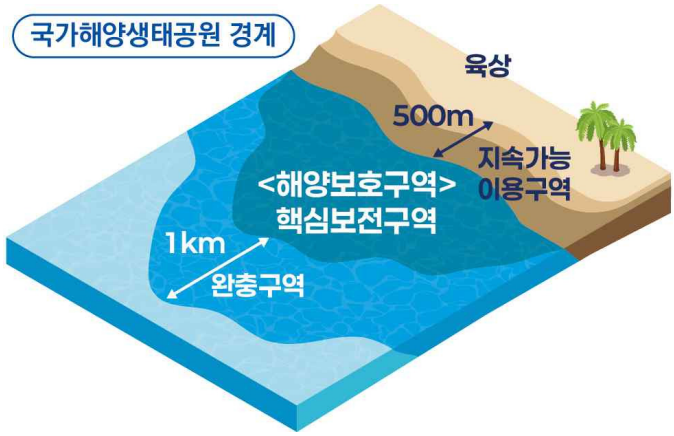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12.2.)(검색일: 2026.9.5.), p. 14.

최초 지정된 4개 공원도 이러한 공간관리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생태적,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원구역을 설정하였다.

공원별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충남 가로림만은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 8종이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서식지 및 산란지로서 가치가 높다. 국가해양생태공원 면적은 147.05㎢이다. 경북 포항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 12종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의 대표적인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공원 면적은 139.35㎢이다. 전남 신안·무안은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 5종이 서식하는 습지보호지역으로, 2021년 7월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공원구역 면적은 1,785.475㎢로 지정된 4개소 중 가장 넓다. 전남 여자만은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 등 보호생물 9종이 서식하는 지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으로, 공원 면적은 84.872㎢이다.

〈표 2-3〉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구역(안)

공원명	주요 특징	지정 구역도
가로림만	• 보호구역 지정일: 2016.7.28. • 법정구역: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생물: 보호생물 총 8종 서식 • 특징: 가로림만 해역의 점박이물범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산란지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147.05㎢** – (핵심구역) 92.04㎢ – (완충구역) 13.61㎢ – (지속가능이용구역) 4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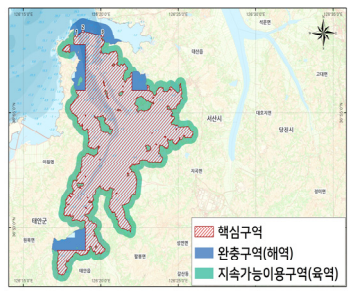
호미반도	• 보호구역 지정일: 2021.12.31. • 법정구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물: 보호생물 총 12종 서식 • 특징: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경상북도 기념물 제39호 '호미곶 등대'가 위치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139.35㎢** – (핵심구역) 71.77㎢ – (완충구역) 50.38㎢ – (지속가능이용구역) 17.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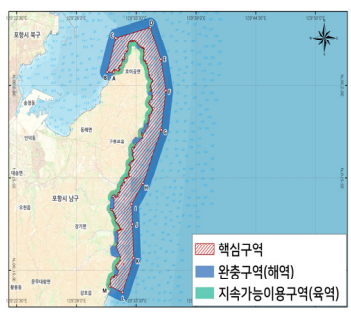
신안·무안	• 보호구역 지정일: 2010.1.29.(신안), 2001.12.28.(무안) • 법정구역: 습지보호지역 – 신안갯벌: 1,100.86㎢ – 무안갯벌: 113.34㎢ • 해양생물: 보호생물 총 5종 서식 • 특징: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 서식지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021.7.)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1,785.475㎢** – (핵심구역) 1,015.937㎢ – (완충구역) 200.71㎢ – (지속가능이용구역) 568.8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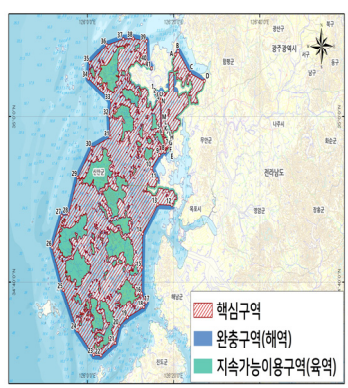

공원명	주요 특징	지정 구역도
여자만	• 보호구역 지정일: 2003.12.31.(보성), 2003.12.31.(순천) • 법정구역: 습지보호지역 – 순천만갯벌: 28㎢ – 보성벌교갯벌: 33.92㎢ • 해양생물: 보호생물 총 9종 서식 • 특징: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가 서식하는 지역이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2021.7.) •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84.872㎢** – (핵심구역) 38.852㎢ – (완충구역) 20.96㎢ – (지속가능이용구역) 25.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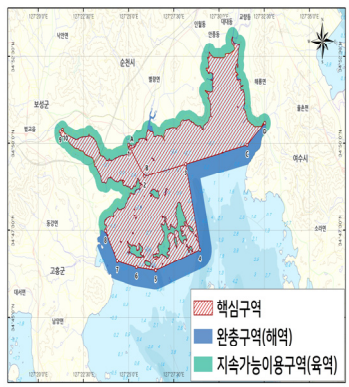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12.2.)(검색일: 2026.9.5.), p. 7.

한편, 우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부산, 인천, 보령, 울릉도, 화진포, 여수·고흥 등 6개소는 예정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신규 또는 확대 지정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보완 등을 유도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정 공원별 추진 현황

우선 지정된 4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수립 등 조성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다만 공원별 사업 추진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진행 단계에는 차이가 있다.

충남 가로림만은 2024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에서 탈락한 이후 2026년 말 재추진을 준비 중이다. 경북 호미반도는 2024년 1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통과 시 2028년 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 여자만은 2025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 말 조사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 착수가 예상된

다. 신안·무안은 신규 사업을 구상 중인 단계로, 향후 사업계획 구체화에 따른 후속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표 2-4〉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지별 추진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가로림만(충남)	호미반도(경북)	여자만 (보성·순천, 전남)	신안·무안(전남)
사업 위치	충남 서산시·태안군 가로림만 일대	경북 포항시 호미반도 일원 (호미곶면, 구룡포읍, 장기면, 동해면)	전남 여자만 보성·순천 일원	전남 신안·무안군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 일원
사업 기간	2024~2028	2026~2030	2027~2031	2026~2034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1,236억 원 (국: 834, 지: 402)	1,007억 원 (국: 705, 지: 302)	1,697억 원 (국: 1,174, 지: 523)	3,099억 원 (국: 2,169, 지: 930)
사업 내용	· 가로림만 보전센터 · 서해갯벌생태공원 · 점박이물범관찰관 · 생태탐방로 · 생태탐방뱃길	· 교육·홍보·복원 · 생태관광	· 생태계보전·복원 · 교육진흥 · 지역상생	· 해양생태 보전·복원 · 해양생태 관광거점화 · 지속가능 지역상생
기타	-	-	-	전남 갯벌생명관 (420억 원) 건립 타당성 검토 중
예타 현황	재조사 탈락 (2024.7.)	조사 진행 중 (2024.11.~)	대상 선정 (2025.11.)	사업 구상 중
향후 계획 (예타 통과 시)	2026년 말 재도전 예정	2028년 조성 완료 목표	2027년 거점 조성 착수	-
국가 해양생태공원 계획도				-

자료: 해양수산부(2026.6.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관련 법·제도 현황

1) 국가해양생태공원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개념

「해양생태계법」은 해양자산의 가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16호 본문). 즉 '국가해양생태공원'이란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제43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범위를 자연공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동호단서).

이러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개념에 대하여 정부는 2025년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면서 보전·활용, 복합공간이라는 성격을 강조하며 그 의미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즉, 동 전략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해양공원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증진시키고 보전과 활용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에 대해 규제 중심의 보호구역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응적 관리를 통해 생태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한편,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 조사·연구, 교육과 인식증진, 국민 참여, 이용, 주민 혜택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종합적 해양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7)]

7)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12.2.)(검색일: 2026.7.6.)

〈그림 2-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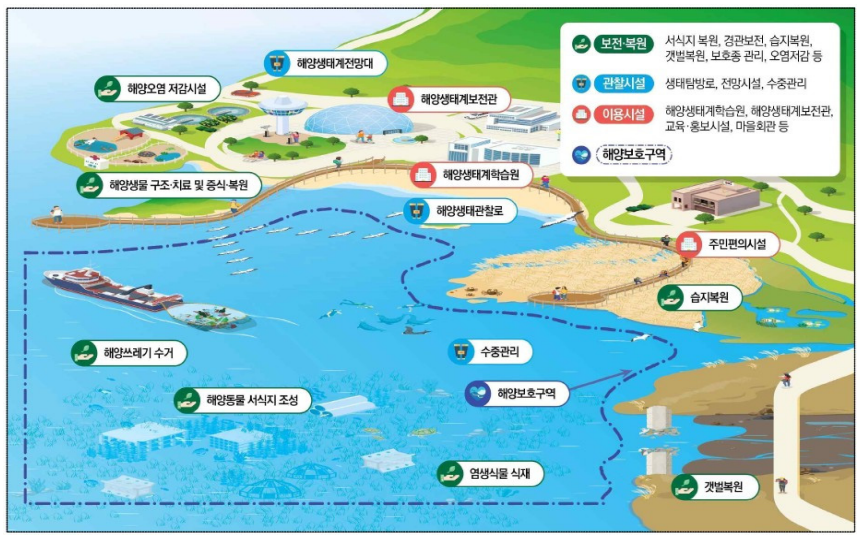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12.2.)(검색일: 2026.7.6.), p. 9.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해양생태계법」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대상을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 그 인근 해역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3조의2제1항).

그리고 동법은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가능성 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① 해양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해양생태계의 우수성), ②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이

법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가능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대책의 시행실적이 뛰어날 것(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영 제21조의2제1항).

또한 동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법 제43조의2제2항).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고, 지정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영 제21조의2제2항, 법 제43조의2제3항).

이러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통해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였다. 즉, 가로림만은 점박이 물범이 서식하는 등 해양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 신안·무안 갯벌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이라는 점, 여자만은 철새 도래지 등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점, 호미반도는 게바다말 등 해양보호생물이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해안권 대표 보호구역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8)]

8)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12.2.)(검색일: 2026.7.6.)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해양생태계법」은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시설 설치·운영,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3조의3제1항).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 제43조의3제2항).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법 제43조의3제3항).

다만 정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운영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즉, 동 전략은 ①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②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협력적 관리기반 구축을 3대 전략으로 하여 9개 추진과제를 정하고 있다. ①의 경우 공원 구역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강화, 자율형·참여형 관리를, ②의 경우 친환경 운영체계 도입, 통합관리를 통한 국민 인식증진,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 구축을, ③의 경우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관리제도 고도화를 추진과제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9)]

9)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12.2.)(검색일: 2026.7.6.)

〈그림 2-5〉 국가해양생태공원 운영 전략의 주요 내용

비전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계의 혜택, 국가해양생태공원		
목표	해양생태계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관리기반 구축
	2030년까지 국가해양생태공원 4개 지정·운영	2030년까지 방문객 연간 1,000만명	2028년까지 「해양생태계법」 개정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
1.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	1 공원 구역에 대한 과학적 모니터링 2 해양생태계 보전·복원 강화 3 자율형·참여형 관리
2.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1 친환경 운영체계 도입 2 통합관리를 통한 국민 인식증진 3 지속가능한 이용 환경 구축
3. 협력적 관리기반 구축	1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2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3 관리제도 고도화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12.2.)(검색일: 2026.7.6.)

2) 국립공원

(1) 국립공원의 개념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중 하나로 국립공원을 자연생태계 또는 자연·문화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제2호). 즉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의 지정

「자연공원법」은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보존, 위치 및 이용편의로 구분하여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즉, ① 자연생태계의 경우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② 자연경관의 경우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③ 문화경관의 경우 국가유산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④ 지형보존의 경우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⑤ 위치 및 이용편의의 경우 국토의 보전·이용·관리 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을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영 제3조 별표 1).

또한 동법은 지역주민 의견 수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 등 국립공원의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②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 청취,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④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법 제4조의2제1항). 그리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자연공원의 명칭, 종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및 공원관리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6조).

(3) 국립공원의 관리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원기본계획 수립, 국립공원 계획 결정 등을 통해 지정된 국립공원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은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구역 변경 사유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자연공원은 ① 군사목적 또는 공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제7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서 자연공원으로 존치시킬 필요

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구역을 축소할 수 없다(법 제8조제1항).

그리고 동법은 공원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자연공원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국립공원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 국립공원위원회 위원·특별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영 제5조~제6조). 특히 국립공원위원회 운영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이라는 훈령을 통해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의무, 회의 및 운영, 수당 등 국립공원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규정 제1조~제16조).

한편, 동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의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 국립공원계획 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즉, 자연공원 기본계획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자연공원의 지정 현황, 자연생태계 현황, 자연공원의 관리전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1조). 그리고 국립공원 계획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③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한다(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마지막으로 동법은 국립공원 관련 사업 및 관리에 대하여 국고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공원에 관한 비용, 국립공원의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43조제1호 및 제3호).

3) 국가정원

(1) 국가정원의 개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은 정의 규정에서 국가정원에 대한 별도의 개념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법 제2조제1의2호 본문). 다만,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②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③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④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정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법 제2조제1의2호 단서 및 영 제1조의2).

한편, 동법은 국가정원을 정원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으로 구분되고, 그중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제2항).

(2) 국가정원의 지정

「수목원정원법」은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및 운영실적 등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① 지방정원의 면적 및 구성,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이 국가정원의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고, ②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등 조직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며, ③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 등 지방정원의 운영실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영 제8조의3제1항 별표 2의3).

또한 동법은 국가정원 지정에 필요한 조사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산림청장은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법 제18조의3제3항). 그리고 산림청장은 위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법 제18조의3제2항).

(3) 국가정원의 관리

「수목원정원법」은 국가정원을 포함한 정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산림청장은 수목원의 확충, 수목원 사업과 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법 제6조제1항). 그 기본계획에는 ① 수목원·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② 수목원·정원 조성현황, ③ 수목원·정원에 대한 지원 및 수목원·정원 간의 교류확대, ④ 수목원·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6조제2항).

그리고 동법은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산림청장은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법 제18조의3제4항).

한편, 동법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설립하여 국가정원을 포함한 정원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정원 진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정원 진흥에 필요한 정보 및 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제공, 정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정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정원 내 식물의 보전·증식·보급, 정원 진흥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등 정원 진흥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 관련 사업 이외에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영 제8조의11).

4) 국가도시공원

(1) 국가도시공원의 개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10]은 정의규정에서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별도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신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대한 조문에서 도시공원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3호). 그리고 도시공원은 국가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으로 크게 구분하되, 국가도시공원의 경우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5조제1항).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공원녹지법'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도시공원 지정의 근거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으로 약칭

(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도시공원법」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관련 특례 규정(제25조의2)에 근거하여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동법은 시행령에서 ① 도시부지, ② 운영 및 관리, ③ 공원시설로 구분하여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요건을 정하고 있다(영 제24조의2제1항 별표 1의2). 즉, ① 도시부지의 경우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 이상일 것,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② 운영 및 관리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직접 해당 도시공원을 관리할 것, 해당 도시공원의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위 조직에는 방문객에 대한 안내·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해당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③ 공원시설의 경우 도로·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은 공원관리청의 국가도시공원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25조의2제1항). 다만,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영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

(3) 국가도시공원의 관리

먼저 「도시공원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원녹지의 확충 및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 기본계획에는 전국 공원녹지 확충의 기본방향·목표, 전국 공원녹지 조성 현황,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조의2제3항).

그리고 동법은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경우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법 제25조의2제2항).

한편, 동법은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도시공원의 관리 정책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도시공원과 연접하여 있는 공원·녹지의 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만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인 2026년 8월 27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49조의2제4항).

5) 종합 및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국가해양생태공원 법제는 지정 제도 측면에서는 지정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법제와 비교할 때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리 제도 측면에서 지정해제 변경, 계획 수립, 사업 관리기관과 관련하여 큰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제도는 두고 있으나, 지정해제·변경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물론 국가정원과 국가도시공원도 지정해제·변경 조문이 없으나, 국립공원은 지정해제·변경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 이후 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정해제·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양생태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된 공원을 관리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계획 수립 제도가 미흡하다. 즉, 국립공원은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국립공원 계획 결정을 통해,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은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가 지정한 공원 또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방향을 일부 설정할 수 있겠으나,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된 공원에 관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부재하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분리된 「국립공원공단법」에 근거하여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정원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설립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운영 재원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등 국가정원 진흥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

〈표 2-5〉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법·제도 현황

구분		국가해양생태공원	국립공원	국가정원	국가도시공원
근거법률		해양생태계법	자연공원법	수목원정원법	도시공원법
개념		O (법 제2조제16호)	O (법 제2조제2호)	△ (법 제2조제1의2호, 법 제4조제2항제1호)	△ (법 제2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제1호)
지정	대상	O (법 제43조의2제1항)	X	X	X
	기준 (요건)	O (법 제43조의2제4항, 영 제21조의2제1항)	O (법 제7조, 영 제3조)	O (법 제18조의3제2항, 영 제8조의3제1항)	O (법 제25조의2제3항, 영 제24조의2제1항)
	절차	O (법 제43조의2제1항·제2항, 영 제21조의2제1항)	O (법 제4조의2, 영 제2조의3)	O (법 제18조의3제5항, 영 제8조의3제2항~제4항)	O (법 제25조의2제3항, 영 제24조의2제2항·제3항)
관리	지정 해제 ·변경	X	O (법 제8조, 영 제4조)	X	X
	위원회 (협의회)	O (법 제43조의3제3항)	O (법 제9조~제10조의2) 영 제5조~제6조)	X	O (법 제49조의2)
	계획	X	O (법 제11조·제12조)	O (법 제6조)	O (법 제4조의2)

구분		국가해양생태공원	국립공원	국가정원	국가도시공원
	예산지원	O (법 제54조제3의2호)	O (법 제43조)	O (법 제18조의3제4항)	O (법 제25조의2제2항, 영 제24조의2)
	사업 관리기관	X	X (국립공원공단법 별도 규정)	O (법 제18조의19)	X

자료: 해양생태계법·수목원정원법·도시공원법(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3. 관련 법정계획 및 국가전략 수립 현황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도입과 추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되는 상위계획 내지 관련계획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2025.12.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해양수산부, 2024.4.) 해양생태축 관리계획(해양수산부, 2023.6.)을 들 수 있다. 세 계획 모두 「해양생태계법」 체계 안에서 마련되었으나 국가해양생태공원과의 연관 정도는 서로 다르다. 이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은 제도의 직접적인 실행계획인 만큼 상세히 검토하고, 나머지 두 계획은 국가해양생태공원과의 접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한다.

〈표 2-6〉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계획 비교

구분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기관	관계부처 합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수립시기	2025.12.	2024.4.	2023.6.
계획기간	2030년 목표	2024~2028년	2023~2027년
법적성격	정책 실행계획	해양생태계법 제38조 법정계획	해양생태계법 제9조의3 법정계획
국가해양생태공원과의 관계	제도의 직접 실행계획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의 세부과제로 국가해양생태공원(해양정원) 조성 포함	관리거점 확대 전략에서 가로림만·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생태축 거점으로 명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12.2.)(검색일: 2026.9.5.); 해양수산부(2024.4.);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6.29.)(검색일: 2026.7.1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11]

이 전략은 2025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어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25-12-4)으로 상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의 실행계획이다. 부제

11) 관계부처 합동(2025.12.2.)(검색일: 2026.9.5.)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해양보호구역 제도 개선”이 보여주듯 해양보호구역이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를 넘어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경으로는 해양보호구역이 소규모로 지정되고,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투입되는 재정지원마저 부족하여(2025년 기준 개소당 연간 지원예산 0.53억 원 수준) 실효적인 보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점, 국민의 해양환경 인식이 높아지면서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체험하고 교육받는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점, 「해양생태계법」 개정(2022.12.)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로림만과 호미반도 등 지역별로 개별 추진되어 온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제기된 점을 든다.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개념과 지정방향, 지정계획안과 운영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해양공원으로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고 함께 이용하는 복합공간이며, 규제 중심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적응적 관리를 통해 생태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성격을 지닌다. 지정방향으로는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을 확대하는 원칙, 바다와 인접 육지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광역화 원칙, 보전조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되 민간협력과 지역주민 혜택을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는 원칙을 제시한다.

지정계획(안)을 보면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광역시도에서 10개소가 지정을 희망하였으며, 이 가운데 조성계획을 마련한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4개소를 2025년 하반기 우선 지정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6개소는 해양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이나 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예정구역으로 관리한다. 운영전략은 비전을 “함께 누리는 해양생태계의 혜택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설정하고 ‘해양생태계 보

전 강화',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협력적 관리기반 구축'이라는 3대 전략 아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각 전략에는 과학적 모니터링과 서식지 복원 등 보전 강화 방안, 친환경 운영체계와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 방안, 민관협력 거버넌스와 관리제도 고도화를 통한 협력기반 구축 방안이 포함된다.

이 전략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정책방향으로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 10년 단위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그 공백을 메우는 정책문서이다.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책 방향과 수단을 가장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문서이므로, 법 개정 이전은 물론 법 개정 이후 기본계획에 흡수되는 과정이나 본 연구 제4장에서 제안하는 관리계획 수립지침, 법 개정안 등 작업 전반에 실질적인 준거가 된다.

구체적으로 핵심구역·완충구역·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이어지는 3단계 공간관리체계는 관리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할 계획구역의 설정방식과 직결되며, 공원마을 지정, 자율용도구역제 도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이 전략이 제시한 운영수단은 관리사업계획에 포함할 세부 사업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협의회와 지역관리위원회 전문가 자문단으로 이어지는 민관 협력적 관리·운영체계는 본 연구 제4장에서 제안하는 지침에서 관리계획 수립절차의 협의·심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에도 참고가 된다. 전주기관리 평가방법과 관리효과성 평가체계 도입계획 역시 지침의 성과점검 및 환류계획 부문을 구체화하는 데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략에서 밝힌 「해양생태계법」 개정 방향과 향후 10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방침은 앞서 검토한 관리계획 수립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계획위계 설정과 긴밀히 연동되어야 하며,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하는 관리계획 수립지침 역시 기본계획 체계에 맞추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12)]

해양수산부가 2024년 4월「해양생태계법」제38조에 따라 수립한 중장기(2024~2028) 국가계획으로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을 비전으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위험요인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이라는 4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그림 2-6〉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주요 내용



자료: 해양수산부(2024.4.), p. 3.

12) 해양수산부(2024.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이 대책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직접 연관되는 지점은 전략3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의 첫 과제로 제시된 국가해양생태공원(해양정원) 조성이다. 대책은 가로림만과 호미반도를 사례로 들며 국가해양생태공원이 해양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도록 관리지침과 운영방안을 마련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 전략이 수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의 위상과 방향을 선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갯벌생태마을 지정, 갯벌생태해설사 양성,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검토 등 이 대책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이용 수단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공원마을 지정이나 지불제 모델과 상당 부분 연계되어 있어 관리계획 수립 시 동 대책의 관련 과제와의 정합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해양생태축 관리계획[13)]

해양수산부가 2023년 6월「해양생태계법」제9조의3에 따라 수립한 법정계획(2023~2027)으로 한반도 주변해역을 서해 갯벌 보전축, 남해 도서생태 보전축, 동해안 생태 보전축,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전축, 기후변화 관찰축의 5대 해양생태축으로 구분하고, 연결성 강화, 관리거점 확대,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3대 전략으로 각 축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서해 갯벌 보전축과 동해안 생태 보전축의 관리거점 확대 전략에서 각각 가로림만과 포항 호미곶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관리·연구·교육 거점으로 육성하는 과제로 명시하고 있으며, 회유성 해양보호생물 보전축에서도 가로림만 해양생태정원(해양생태공원) 사업에 점박이물범 관찰시설을 포함하는 방향을 제시한

1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6.29.)(검색일: 2026.7.1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다. 이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이 개별 해양보호구역의 점적 관리를 넘어 5대 해양생태축이라는 광역적 생태연결성 확보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공원별 특성화 방향이나 깃대종 설정 등에 해당 생태축의 관리목표를 참고할 수 있다.

〈그림 2-7〉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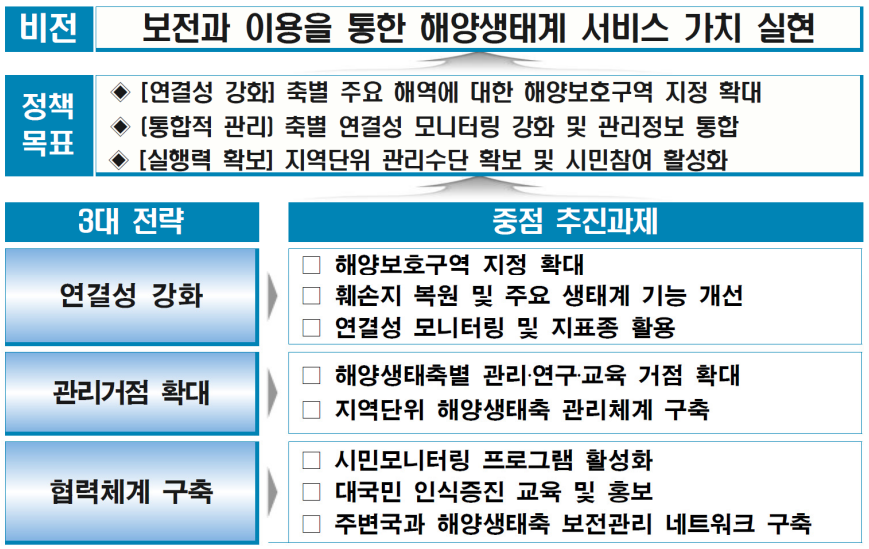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6.29.)(검색일: 2026.7.14.), p.3.

4.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기존 보호지역의 공간적 관계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기존 보호지역 간 공간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025년 12월 최초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의 구역 경계와 기존 법정 보호지역 및 주요 생태자료를 GIS 기반으로 중첩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해양보호구역, 연안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구역 및 등재 예정지역, 국립·도립공원의 해상구역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지질공원 명소, 천연기념물, 잘피 분포지역, 점박이물범 이동경로 및 염생식물 서식지 정점 등 주요 생태자료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의 핵심구역은 기존 해양보호구역 또는 연안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된 반면,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은 기존 보호지역의 외곽으로 확장되는 공간적 특성을 보였다. 또한 공원별 입지와 생태적 특성에 따라 중첩 또는 인접하는 보호·관리지역의 유형과 공간적 관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핵심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외곽을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이 둘러싸는 공간적 구조를 보인다.

핵심구역 일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등재 지역과 공간적으로 중첩되는 반면, 서측 해안에 위치한 국립공원 구역과는 직접적인 중첩이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생태자료를 중첩한 결과, 점박이물범의 이동경로는 공원 북서측 외해에 분포하며, 염생식물 서식지 정점은 공원구역 내·외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가로림만 중복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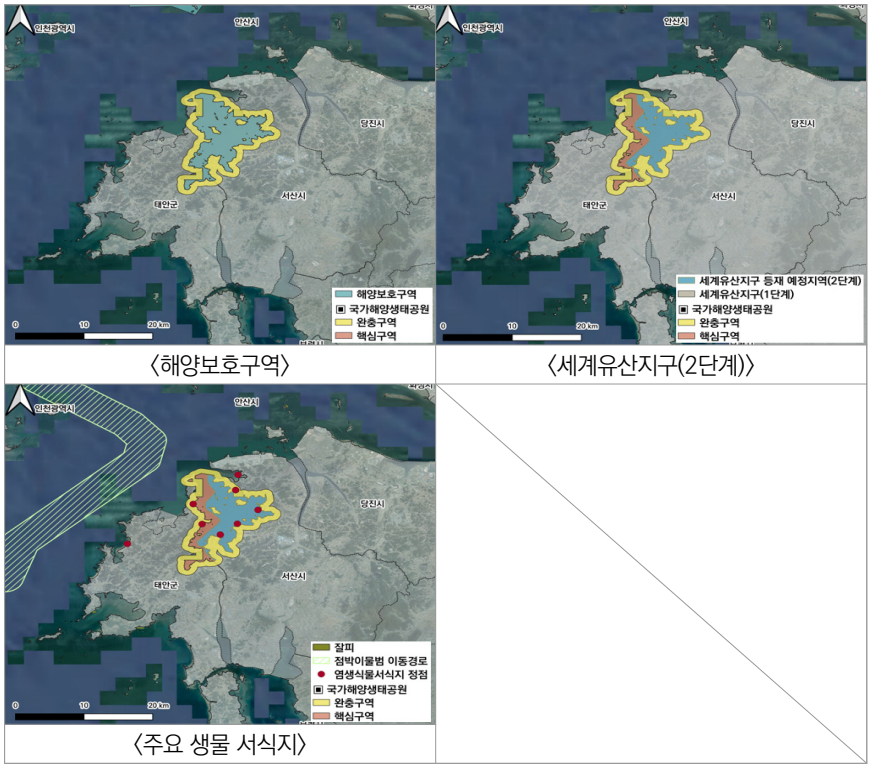

〈해양보호구역〉 〈세계유산지구(2단계)〉

〈주요 생물 서식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2026.9.),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내부자료).

2)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핵심구역은 기존 해양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 외곽으로 완충구역이 형성되어 있다.

연안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및 자연공원과의 직접적인 중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경북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의 일부 명소가 공원구역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다른 공원과 달리 국가지질공원과의 공간적 연계가 확인되었다.

〈그림 2-9〉 호미반도 중복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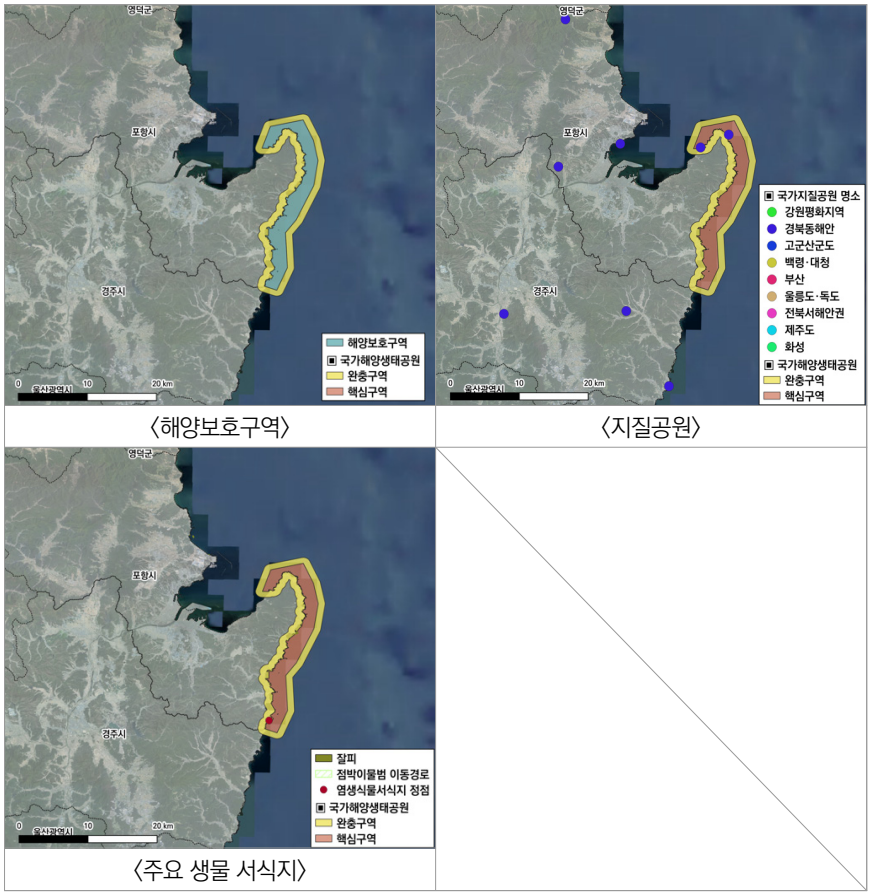

〈해양보호구역〉 〈지질공원〉

〈주요 생물 서식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2026.9.),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내부자료).

3)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신안갯벌과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핵심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다만 기존 습지보호지역의 일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구역 외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구역에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구역과 2단계 확대등재 지역, 람사르습지, 도립공원 등 다양한 보호·관리지역이 중첩되어 있으며, 남서측에는 국립공원 구역이 인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중 기존 보호·관리지역과의 공간적 관계가 가장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10〉 신안·무안 중복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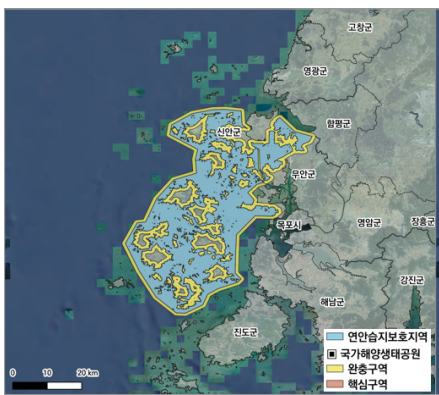

〈연안습지보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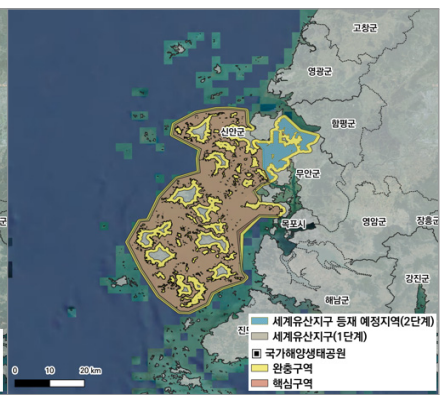

〈세계유산지구(1, 2단계)〉



〈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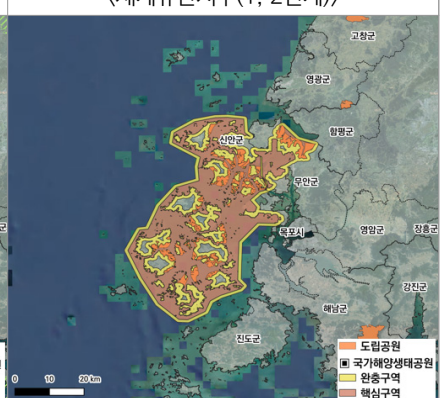

〈도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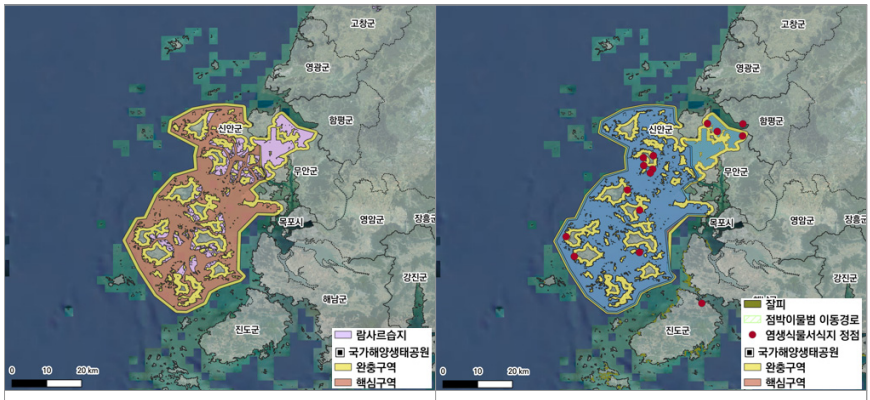

〈람사르습지〉 〈주요 생물 서식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2026.9.),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내부자료).

4)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핵심구역은 순천만갯벌과 보성·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존 습지보호지역의 일부는 공원구역 외부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만 일대의 람사르습지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구역 등이 공원구역과 중첩되어 있으며, 공원 남측에는 도립공원 구역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등재 지역이 공원 남측 여자만 해역으로 확장되어 있어, 공원구역과 주변 보호·관리지역 간 공간적 연계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1〉 여자만 중복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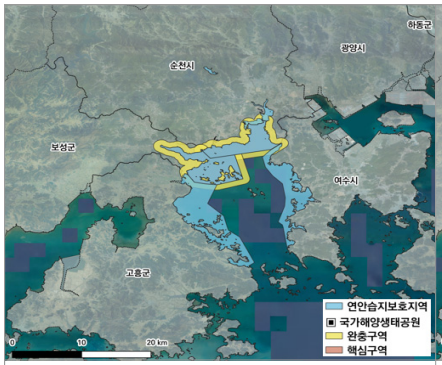

〈연안습지보호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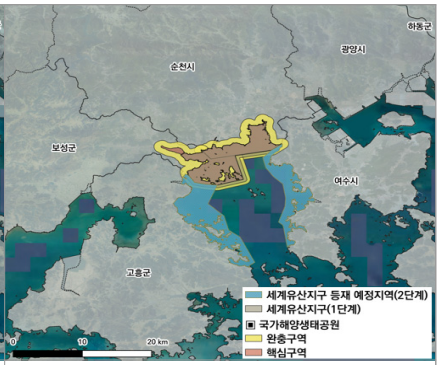

〈세계유산지구(1, 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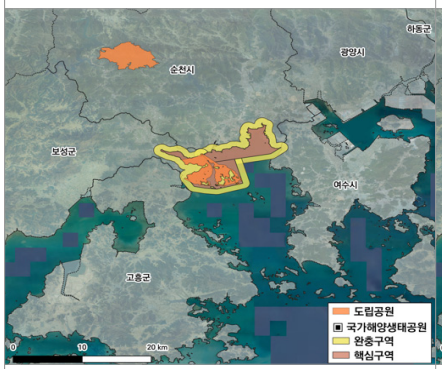

〈도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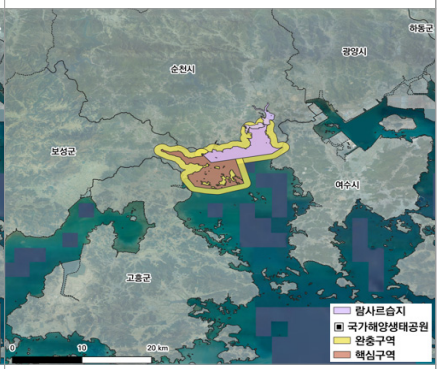

〈람사르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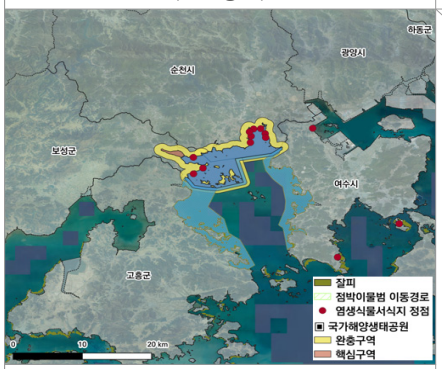

〈주요 생물 서식지〉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연구본부(2026.9.),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내부자료).

5) 종합

GIS 중첩분석 결과,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의 핵심구역은 기존 해양보호구역 또는 연안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을 통해 주변 해역과 육역으로 관리범위가 확장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공원별로 중첩 또는 인접하는 보호·관리제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기존 보호지역과 별개의 독립적인 보호지역으로 관리하기보다, 기존 보호지역을 생태적 핵심공간으로 하여 주변 해역과 육역을 연계하는 광역적 공간관리체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존 보호지역의 보호목적과 관리수준을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 및 법정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별 보호·관리체계와 계획을 국가해양생태공원 차원에서 연계·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2-7〉 공원별 주요 보호·관리지역 중첩 및 인접 현황

구분	가로림만	호미반도	신안·무안	여자만
해양보호구역	핵심구역과 일치	핵심구역과 일치	-	-
연안습지보호지역	-	-	핵심구역 대부분	핵심구역과 중첩, 일부 공원 경계 밖분포
람사르습지	-	-	핵심구역 내 산재	핵심·완충구역
세계유산지구(1단계)	-	-	핵심구역 대부분	핵심구역
세계유산지구(2단계)	핵심구역 일부	-	무안 방면 일부	공원 남측 광역
국립공원(해상)	서측 인근(비중첩)	-	남서측 인접	-
도립공원(해상)	-	-	핵심구역 내 점재	남측 일부
국가지질공원	-	명소 분포	-	-
중첩 제도 수	2	2	5	4

주: 중첩·분포 유형 수는 공원구역과 공간적으로 중첩되거나 내부에 분포하는 보호·관리지역 및 예정지역의 유형 수를 의미하며, 공원 외부에 인접한 지역은 제외함.
자료: 저자 작성

제2절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운영 한계

1.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이후 관리·운영상의 한계와 제도 개선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먼저 2025년 12월 최초 지정된 4개 국가해양생태공원(충청남도 가로림만, 경상북도 호미반도, 전라남도 여자만과 신안·무안)의 관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6월 1일 의견수렴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담당 공무원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실무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다.[14] 또한 2026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가 개최한 제1차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에 참석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기관 및 민간위원 등 총 18명의 위원이 제시한 공원의 정체성과 관리 및 운영 방향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두 차례의 의견수렴 결과,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지정 이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개선 수요는 추진 거버넌스, 계획 수립 및 법·제도, 재정 및 인력, 사업 추진 및 운영 방식의 네 가지 분야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현장 의견을 중심으로 분야별 관리·운영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다.

14)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17인(2026.6.1., 대한민국 오송).

2. 분야별 제도적 한계 및 개선 수요

1) 추진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

(1)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지역 대표성 미흡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는 「해양생태계법」에 근거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협의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전문기관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위촉직 민간위원 5명으로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민간위원의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공원 소재 지역의 시민단체와 지역 전문가 등이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공원 관리·운영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회 위원 구성 시 지역별 대표성과 현장 전문성을 균형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 및 권한 분담체계 미비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관리센터 운영, 주민지원 사업, 교육 및 홍보, 생태조사·연구 및 과학적 모니터링 등 주요 사업의 수행 주체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향후 운영 과정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이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와 행위 승인, 현장 단속 등 관리권

한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정책 총괄과 광역적, 전문적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하는 등 주체별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협력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전담 관리조직 부재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 전반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이 각각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한 전담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 국가정원의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의 전문관리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별도 전담기관을 신설하거나 기존 전문기관 내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한편 별도 관리기관이 규제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에 지역 관리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운영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 등 다양한 관리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병존하였다.

2) 계획 수립 및 법·제도 기반의 한계

(1) 국가 및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체계 미정립

국가 차원의 중장기(10~20년)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공원별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국가 차원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장기 사업방향과 재정 소요를 함께 검토해야 재정경제부 예산 협의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 주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중앙정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역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수립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 기본계획과 공원별 관리계획 간 위계를 정립하고, 계획의 수립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2) 중첩 법·제도 간 정합성 부족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해양보호구역과 연안습지보호지역 등을 기반으로 지정되어 「해양생태계법」, 「습지보전법」, 「갯벌법」 등 다양한 법률과 관리제도가 적용되는 공간이다. 또한 일부 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과 중첩되어 있어 관련 국가유산 관리체계와의 연계도 요구된다.

이처럼 동일한 공간에 다양한 보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제도별 관리주체와 계획체계의 차이로 행정적 혼선과 권한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기존 보호지역의 관리체계를 존중하면서 「해양생태계법」을 중심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과 관련된 법령 및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 간 연계 및 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3) 토지 수용·매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공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조성 과정에서는 탐방시설과 기반시설 설치, 생태복원사업 등을 위해 사유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 「해양생

태계법」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의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절차를 활용해야 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한편 현행법에는 토지 매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매수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유해시설 정비와 주요 생태공간 확보 등 관리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에 공원 관리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법적 수단과 재정적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3) 재정 및 인력 기반의 한계

(1) 재정지원 체계의 미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향후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특히 시설 조성뿐 아니라 운영 프로그램, 주민참여 및 지역상생 사업 등 지속적인 관리활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과 국가해양생태공원 운영예산의 지원 목적과 범위를 구분하여 재정지원체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 전문인력 및 운영역량 부족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을 전담할 조직과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만으로 신규 공원사업까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 조성(Hardware)과 함께 운영조직 및 전문인력(Software)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생태해설, 조사·연구, 주민참여, 교육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운영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4) 사업 추진 및 운영 방식의 한계

(1) 공원의 정책적 정체성 및 운영방향 정립 필요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국립공원, 국가정원, 해양보호구역과 구분되는 정책적 정체성과 운영방향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관광객 유치나 시설 조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실현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공원별 자연환경과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보전, 복원, 교육 등을 중심으로 공원 관리 및 운영 철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시설 중심의 사업 추진과 보전-이용 간 균형 문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계획은 체험관, 전시관, 탐방시설 등 시설사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원 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유사 시설의 중복 조성과 과도한 개발이 향후 지역 갈등과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해양보호지역의 보전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까지 포괄하는 제도인 만큼, 이용활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과도한 방문객 집중(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공원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험 및 생태관광 콘텐츠를 발굴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3) 조사·모니터링 체계의 한계

현재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조사 정점과 주기만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장기적인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조사 방법과 자료 수준에 차이가 있어 조사 결과를 공원 관리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원별 조사방법과 자료 관리기준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별도의 조사 단위로 관리하고 공원별 핵심 생태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정책 브랜드화 및 대국민 인지도 부족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국민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고, 홍보활동도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 브랜드 전략과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공통적인 보전·관리 원칙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전략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국민 인식증진을 통해 해

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대표하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표 정책 브랜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3절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국가해양생태공원은 2022년 12월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추진전략 수립과 국정과제 반영을 거쳐 2025년 12월 최초 4개소가 지정되었다. 이어 2026년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가 구성 및 운영되면서 지정 이후 관리·운영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림 2-12〉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 추진 경과



자료: 저자 작성

이 제도의 정책적 지향점은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은 기존의 규제 중심 보호구역 관리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적응적 관리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전·복원, 조사·연구, 교육·체험, 주민참여 및 지역상생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지향한다. 따라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이용은 보전과 별개의 목적으로 확대하기보다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특성은 공간관리 방식에서도 나타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해양보호구역 또는 연안습지보호지역을 핵심으로 주변 해역과 육역을 연계하는 "광역적" 공간관리제도이다. 실제 지정된 4개 공원의 GIS 중첩분석에서도 기존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핵심구역이 설정되고,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을 통해 관리범위가 확대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이 기존 보호지역과 별개로 운영되기보다, 기존 보호지역의 보전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변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기능해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공원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비해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수단이 미흡하다. 국립공원, 국가정원, 국가도시공원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하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 변경·해제, 공원 관리에 특화된 법정계획, 전문적인 관리·지원체계 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제도의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역시 정책문서라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해양생태계법」, 「습지보전법」, 「갯벌법」 등 관련 보호·관리제도 간 중첩으로 인한 행정적 혼선과 토지 수용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 미비, 토지 매수에 필요한 재원 부족 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계획 수립과 관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회와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도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국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영 권한과 재정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개별 공원의 관리를 연계하는 계획체계가 없어 관리주체별 업무와 사업 우선순위, 재정 및 인력 운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광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개별 지방자치단체나 보호지역 단위의 관리만으로는 공원 전체의 일관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계획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주체별 역할과 권한, 재정 및 전문지원체계를 연계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한편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태계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장 의견수렴에서는 탐방시설과 전시관 중심의 사업만으로는 공원별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과도한 이용이 생태계 보전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적 조사·모니터링과 보전·복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험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 조성과 함께 전문인력, 운영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관리역량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공통 브랜드와 지역별 특성화 전략을 연계하여 국민 인식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종합하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보호지역을 기반으로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연계하는 새로운 해양공간 관리제도로서, 향후 정책의 중점을 지정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관리와 운영체계에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법·제도 정비와 중장기 계획체계 마련, 국가 및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확립, 재정 및 전문 관리역량 강화, 과학적 관리와 성과평가체계 구축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이행될 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 차원의 해양공간 관리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03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 분석

제1절 국내 사례

1. 산림청 국가정원 운영 사례

1) 근거 법률 및 제도 개요[15)]

산림청의 국가정원 제도는 「수목원정원법」에 근거한다. 동법은 정원을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그 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은 정원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다른 관련 제도와 구분하고 있다.

「수목원정원법」은 정원을 조성 및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하고, 기능과 주제에 따라 생활정원과 주제정원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국가정원은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15) 「수목원정원법」을 바탕으로 정리

으로서 정원 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하며,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여가 활성화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 정원 유형별 개념

유형		개념
국가정원		•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지방정원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민간정원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공동체정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생활정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주제정원	교육정원	•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치유정원	•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실습정원	•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모델정원	•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기타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자료: 「수목원정원법」 제4조를 토대로 저자 작성

국가정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운영하는 경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을 승격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확충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지방정원의 면적, 시설의 종류, 구성요소, 운영실적 등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원으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정 대상 정원의 특성과 면적, 식물·시설의 종류, 운영실적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국가정원의 지정요건은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과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으로 구분된다. 우선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 운영한 실적을 갖추어야 하며, 이후 정원의 면적 및 구성, 조직 및 인력, 시설 기준, 운영 실적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정된 국가정원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6]

〈표 3-2〉 국가정원 지정 요건

구분	주요 기준 및 세부 내용
면적 및 구성	• 총면적: 30만 ㎡ 이상(단, 역사적·향토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미만도 가능) • 녹지면적: 정원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호수, 하천 등 녹지 면적이 40% 이상 • 주제원: 서로 다른 주제별로 조성된 정원 5개 이상 포함
조직 및 인력	• 정원 관리 전담 조직 별도 구성 • 안내 및 교육 담당 전문인력 1인 포함하여 정원 관리 전담인력 8명 이상 확보 • 정원 총면적 기준으로 10만 ㎡당 1명 이상의 정원 전문관리인 배치
시설 및 편의	• 주차장, 공중화장실, 교통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구비 • 정원 이용자가 직접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체험시설 보유 • 정원 이용 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안내실 및 관리실
운영 실적	•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 •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

자료: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 2의3]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지정 현황 및 관리체계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지정 및 등록된 정원은 202개소이다. 이 가운데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 2개소이며, 지방정원 16개소와 민간정원은 18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17]

16)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별표 2의3]
17) 산림청(검색일: 2026.7.13.)

〈그림 3-1〉 정원등록 현황(2025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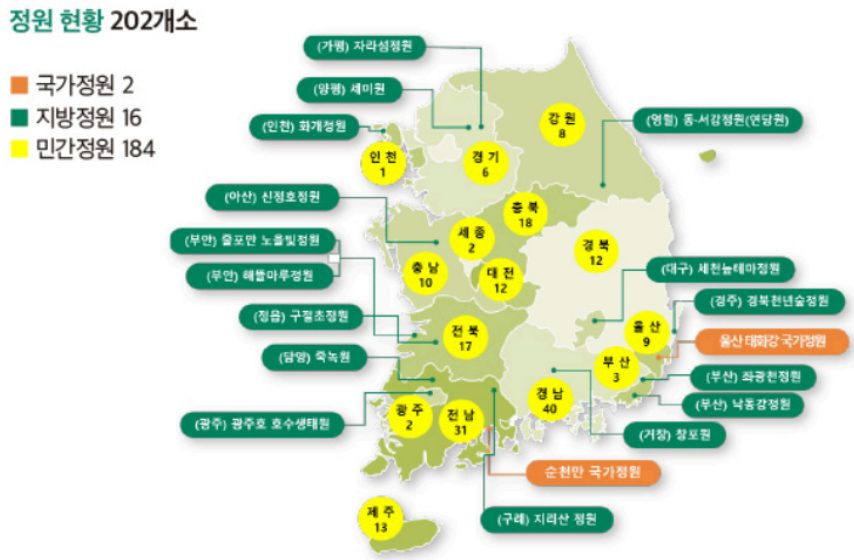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2026), p. 11.

현재 운영 중인 두 국가정원은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사례이다. 순천만정원은 2015년 1월 「수목원정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정원으로 등록되었다가 같은 해 7월 국가정원으로 승격 신청 및 심사를 거쳐 9월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18] 태화강정원은 2018년 4월 지방정원 등록을 거쳐 2019년 7월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다.[19] 두 정원은 국가정원 지정 이후에도 각각 순천시와 울산광역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20]

18) 경향신문(2015.9.5.)(검색일: 2026.7.13.)
19) 월간가드닝(2019.12.4.)(검색일: 2026.7.13.)
20)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검색일: 2026.7.13.)

〈표 3-3〉 국가정원 개요

구분	순천만 국가정원(제1호)	태화강 국가정원(제2호)
지정일자 (지방정원 등록)	2015년 9월 5일	2019년 7월 12일 (2018.4.)
정원 주소	전라남도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 7(오천동)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국가정원길 154
조성주체	순천시	울산시
운영주체	순천시 국가정원운영과	울산광역시 녹지정원국 태화강국가정원과
정원면적	926,992㎡	835,452㎡
녹지면적	377,000㎡	630,504㎡
정원주제원	세계정원 13, 테마정원 16, 참여정원 32	생태정원, 대나무정원, 계절정원, 수생정원, 참여정원, 무궁화정원
운영·관리 규정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2015.12.31. 제정)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2022.6.23.)
지원센터	순천시정원지원센터	울산정원지원센터
위원회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조성 전		
조성 후		

자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검색일: 2026.7.13.)을 토대로 저자 정리

국가정원을 포함한 정원의 관리체계는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중장기 법정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산림청장은 동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정원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원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정원의 조성 현황, 정원에 대한 지원 및 정원 간 교류 확대, 정원의 정보화 및 활용, 정원 확충 및 활성화, 정원 전문인력 양성, 정원의 해외 조성 및 국제교류·협력, 정원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과 시·도 정원진흥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의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정원진흥기본계획은 2016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2026년 발표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은 '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정원나라'를 비전으로, 정원 인프라 확충과 정원문화의 일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도심 속 녹색 생활공간 확충, 정원문화 확산 및 세계화, 정원산업 생태계 육성의 4대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21)]

21) 산림청(2026), p. 14.

〈그림 3-2〉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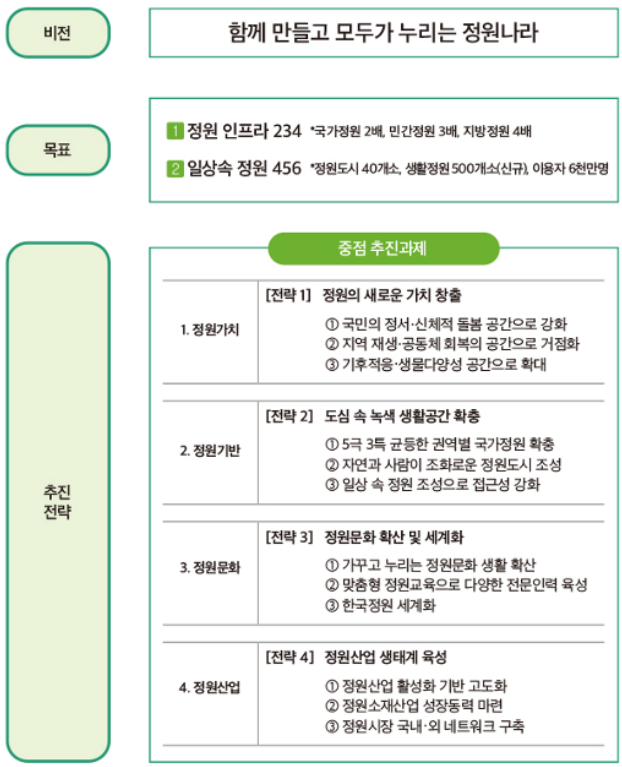

자료: 산림청(2026), p. 14.

한편 국가정원은 개별 정원의 운영·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중앙정부(산림청) 차원에서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지원조직으로 정원지원센터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있으며, 각각 지역 거점의 정원산업 지원과 국가 차원의 정원 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먼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순천시정원지원센터가,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울산정원지원센터가 설치

되어 있다. 정원지원센터는 정원산업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정원산업 자료 수집·보존·전시 등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조직으로, 산림청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2]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의 운영·관리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국립수목원 운영·관리,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하도록 한 사업, 수목원 및 정원 진흥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다만 관리원 역시 개별 국가정원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며, 전국 단위의 정원 진흥과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정원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역할이 구분된다.

3) 위원회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

국가정원은 국가가 지정하되 개별 정원의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 관련 협의, 자문체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마련되어 있다. 「수목원정원법」에서 모든 국가정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순천만 국가정원과 태화강 국가정원은 각각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문·심의 기구로서 정한 위원회를 통해 주요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순천만 국가정원은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만국가정원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국가정원의 관리·운영, 학술적 지원, 시설 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각종 조형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2) 「수목원정원법」 제18조의15를 토대로 저자 작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순천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국가정원 업무 담당 국·소장, 국가정원 관할구역 동장으로 구성된다. 위촉직 위원에는 순천시의회 의원, 정원·조경·화훼·관광·철도(궤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산림청 국·과장,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청 국·과장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회의록 작성·비치와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23)

다음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가 대행한다. 해당 위원회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비전과 발전방향,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녹지정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원 관련 전문가, 정원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시민정원사,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성별 구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 사무를 위한 간사를 둔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처럼 태화강 국가정원은 별도의 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기존 정원문화 관련 위원회에 국가정원의 심의·자문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4)

23)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를 토대로 저자 작성
24)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3251호, 2026. 4. 2.)」를 토대로 저자 작성

〈표 3-4〉 국가정원운영위원회 기능

구분	순천만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위원회 명칭	순천만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법적 근거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19조)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3조)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 위원회에서 대행
구성	16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성별 고려하여 구성	20명 이내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주요 기능	1. 국가정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국가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설관련 수익사업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정원 내 각종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국가정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제시 2. 국가정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3251호, 2026. 4. 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 운영 사례

1) 근거 법률 및 제도 개요

국립공원은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자연생태계 또는 자연·문화의 대표성을 가진 지역에 대해 자연공원 중 하나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제도이다. 즉,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25]

25)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6.7.12.); 국립공원공단(검색일: 2026.7.12.)

이러한 국립공원 제도는 무분별한 이용·개발에 따라 훼손될 수 있는 자연자원을 보전하되, 미래세대를 위하여 현명하게 이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동 제도는 풍부한 종다양성을 지닌 자연 생태지역을 보전하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려한 경관지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휴식처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자연과 생명의 신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보전의 결과로 다양한 자연적·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26]

〈그림 3-3〉 국립공원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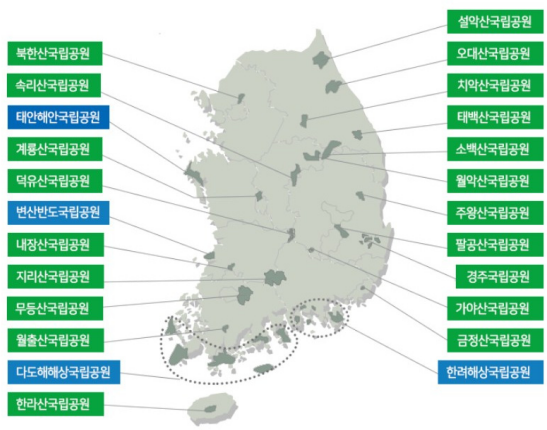

자료: 국립공원공단(검색일: 2026.7.12.)

2) 지정 현황 및 관리 체계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 보유지역 또는 수려한 자연경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즉, 국립공원은 1967년 12월 29일에 지리산국립공원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자연공원의 핵심보호지역으로서 국민의 생태휴양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6) 김홍균(2014), p. 223; 국립공원공단(검색일: 2026.7.12.)

1960년대에는 지리산·경주 등 4개소가, 1970년대에는 설악산·속리산 등 9개소가, 1980년대에는 다도해 해상 등 7개소가 각각 지정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2016년 8월에 태백산이 22번째, 2023년 12월에 팔공산이 23번째, 2026년 3월에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은 현재 24개소가 지정되어 그 면적이 약 6,955㎢에 해당한다.[27)]

국립공원 제도는 지정된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하는 한편, 현장관리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즉, 현재 국립공원은 국가관리 원칙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관 부서로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미래, 자연공원'을 비전으로,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자원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전략으로 규정하여 총 17개의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28)]

둘째,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서는 공원구역의 편입과 해제를 통해 면적을 확대하고,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를 변경하였다. 또한 국립공원 내 설치되는 탐방안내소, 탐방로 등 공원시설도 공원시설이 위치한 용도지구의 취지, 탐방객 이용 행태, 향후 설치 소요 등에 따라 신설 또는 폐지하도록 하였다.[29)]

27) 기후에너지환경부(2026), p. 623; 국립공원공단(2026), p. 3;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5.10.31.)(검색일: 2026.7.12.)
28) 환경부(2022), p. 21.
29) 환경부 보도자료(2023.4.30.)(검색일: 2026.7.12.)

셋째, 국립공원공단은 2016년에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국립공원공단법」을 제정하여 국립공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30] 즉 국립공원공단은 동법에 근거하여 국립공원의 보전, 국립공원의 야생생물 보호 및 멸종위기종의 복원,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및 구조·치료,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국립공원 내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공원구조대 편성·운영, 자연공원 자원에 대한 조사·연구, 자연공원의 청소, 자연공원 이용에 관한 지도·홍보, 자연공원과 관련된 체험사업, 탐방해설 등 탐방프로그램의 개발·교육·보급 및 운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공원의 생태계 영향조사·연구 및 생태복원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 보전·관리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따라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국립공원공단법 제9조).

3) 위원회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

우선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국립공원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실제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공원의 지정·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첫째, 국립공원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설치되어 국립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국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

둘째,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

30) 「국립공원공단법」은 원래 「국립공원관리공단법」으로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되었으나, 2018년 10월 16일에 일부 개정을 통해 법률 명칭이 「국립공원공단법」으로 변경되었음

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영 제5조제1항). 특히 위원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외에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등이 포함된다(영 제5조제2항). 그리고 특별위원의 경우 해당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 그 공원구역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영 제5조제4항). 다만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고,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영 제5조제5항). 한편, 국립공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영 제5조제1항 및 제2항). 위원장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립공원위원회의 의장이 된다(영 제5조제7항).

셋째, 국립공원위원회의 회의는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참고하여 대면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위원회의 회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규정 제6조제1항). 그리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제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규정 제7조제1항). 또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규정 제8조).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제9조제1항).

한편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협력 거버넌

스를 구축하고 있다. 즉, 국립공원은 대부분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보호지역 내 거주 주민들은 각종 제약에 의한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존치마을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 주민들의 노동생산성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정주여건이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10년 국립공원 구역 조정 이후 존치마을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31]

동 사업은 '시설(하드웨어)'이 아닌 '사람(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한 국립공원 보전과 주민 거주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0년 명품마을 제1호 관매도를 시작으로 2011년 3개소, 2012년 4개소, 2013년 1개소, 2014년 3개소, 2015년 1개소, 2016년 2개소, 2017년 2개소, 2024년 2개소로 총 19개 마을이 조성되었다.[32]

〈표 3-5〉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 현황

조성연도	사무소명	마을명	주소
2010	다도해서부	관매도	전남 진도군 조도면 관매도리
2011	한려동부	내도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다도해해상	상서	전남 완도군 청산면 상서리
	월악산	골뫼골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2012	한려동부	함목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다도해해상	평촌	전남 고흥군 점암면 성기리
	다도해서부	영산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영산도리
	소백산북부	죽령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2리
2013	무등산	평촌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2014	다도해해상	동고지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리
	무등산동부	도원	전남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소백산	달밭골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31) 기후에너지환경부(2026), p. 627.
32) 환경부 보도자료(2024.5.3.)(검색일: 2026.7.12.)

조성연도	사무소명	마을명	주소
2015	한려동부	만지도	경남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
2016	지리산북부	와운	전북 남원시 산내면 부운리
	태백산	백천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2리
2017	속리산	밤티	경북 상주시 화북면 중벌2리
	다도해해상	덕포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리
2024	팔공산동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마을	대구광역시 동구 능선, 진인동
			대구광역시 동구 용수동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팔공산서부	퍽정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4.5.3.)(검색일: 2026.7.12.)

3. 국토교통부 국가도시공원

1) 근거 법률 및 제도 개요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제도로, 2016년 신설되었다. 지자체가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을 말한다.

지정 사유는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등의 보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33] 지정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34]

지정되기 위해서는 공원의 부지 면적이 최소 100만 ㎡ 이상임과 동시에 지자체가 해당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35] 그 외에 법에서 요구하는 운영·관리 여건, 공원시설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 도시공원법(법률 제21039호, 2026.8.27.) 제25조의2
34) 도시공원법(법률 제21039호, 2026.8.27.) 제25조의2
35)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포함(도시공원법(법률 제21039호, 2026.8.27.) 제25조의2제1항)

〈표 3-6〉 도시공원과 국가도시공원(신구) 제도 비교

구분	(일반) 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현행	개정안 2026.8.27. 시행
정의	[법 제2조 3.]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	[법 제15조]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좌동
종류	국가도시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	-	-
지정 주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법 제15조] 국가 지정	좌동
지정 위원회	[법 제50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원녹지기본계획)	[법 제25조의2] 국무회의 심의	[법 제25조의2, 법 제49조의2 신설]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관리 주체	[법 제20조] 공원관리청은 공원 또는 시설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 가능	[영 제24조2 - 별표1의2] • 공원관리청이 직접 관리 • 관리 전담 조직 구성 • 8명 이상 전담인력 • 지자체 조례	• 별표1의2 삭제 • 지정신청 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지정시에는 요건 충족 필수
기본 계획	[법 제5조, 법 제9조]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1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 • 수립예외 가능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음)	[법 제4조의2 신설, 법 제49조의2 신설, 영 제3조의2 신설] •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 수립 •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단, 지정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며 관리·운영 사항은 없음

구분	(일반) 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현행	개정안 2026.8.27. 시행
비용 부담	[법 제39조] 관리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법 제25조의2] 국토부장관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설치·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음	[법 제25조의2 신설] 비용(도시공원의 부지매입비용 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음
지정 요건		[영 제24조의2 – 별표] 300만 제곱미터 이상	[법 제25조의2 신설] 100만 제곱미터 이상

주: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영'은 같은 법 시행령을 뜻함. 신설되는 조항은 2026.8.27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1039호를 뜻함

자료: (일반) 도시공원과 현행은 도시공원법(법률 제21447호, 2026.3.5.)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7.1.), 개정안은 도시공원법((법률 제21039호, 2026.8.27.)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9.18.)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2) 지정 현황 및 관리 체계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고, 전국적으로 지정된 일반적인 도시공원은 많지만 아직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다만, 부산 낙동강하구, 광주 중앙근린공원(풍암호수), 대구 두류공원 등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한다는 보도는 있다.[36] 특히 지정될 경우 '1호'라는 타이틀이 붙기 때문에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정이 어려운 이유로 과도한 지정요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37] 이에 기존 지정요건이었던 최소면적 300만 ㎡를 100만 ㎡로 완화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대신하고,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다.[38]

36) 부산일보(2026.4.12.)(검색일: 2026.7.10.); 전라일보(2025.8.24.)(검색일: 2026.7.10.); 오마이뉴스(2025.8.6.)(검색일: 2026.7.10.)

37) 국토교통위원장(2025.8.1.)(검색일: 2026.7.10.)

일반 도시공원은 공원관리청이 다른 주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지만, 국가도시공원은 위탁할 수 없고 공원관리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공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방문자 안내·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최소 8명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39] 이는 과거 지정 신청 시점에 모두 갖추어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지정 신청 시점에 모두 갖추지 못하더라도 이행계획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되, 지정과 동시에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도시공원법」에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과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있지만 국가도시공원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전국 공원녹지의 확충과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예산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중앙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40]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비전과 단계별 추진 전략[4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지정 이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계획의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를 심의하는 중앙도시공원위원회가 법 시행일(2026.8.27.)부터 5년간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라는 점에서도 계획 체계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해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42] 국

38) 도시공원법(법률 제21039호, 2026.8.27.) 개정 2025.8.26., 시행 2026.8.27.
39) 이상의 내용은 도시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9.18.) 제24조의2. 별표 1의2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
40) 도시공원법(법률 제21039호, 2026.8.27.) 제4조의2 및 제49조의2
41) 도시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9.18.) 제3조의2
42) 도시공원법(법률 제21039호, 2026.8.27.) 제5조 및 제9조

가도시공원이 물리적으로 지자체 관할의 공원녹지 체계 안에 있다면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령 내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 관리를 뒷받침할 계획 규정이 부재함을 시사한다.

3) 위원회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

2026년 8월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중앙도시공원위원회는 범부처 협의체의 성격으로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개 부처 고위공무원을 포함하고, 도시공원, 조경, 도시계획, 환경, 생태, 경관, 문화 등 공원녹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43]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 내부의 부처 간 조정에 그치며, 국가와 개별 지자체 간, 혹은 국가도시공원에 도전하는 지자체 간의 상시적 협력채널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절 국외 사례

1.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1) 근거 법률 및 제도 개요

43) 도시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9.18.) 제50조의4

호주 정부는 대보초(Great Barrier Reef)의 생태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1975년에 「대보초해양공원법」(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 이하 'GBRMP법'이라 한다)을 제정한 후 GBRMP로 지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44] 동법은 대보초 지역의 환경, 생물다양성,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A조제1항). 이와 함께 교육·연구·관광·문화활동 등 대보초의 지속가능한 이용, 주정부·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세계유산협약 의무 이행을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2A조제2항). 즉, GBRMP법은 대보초의 보호·보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사회의 협력 거버넌스를 중요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GBRMP법은 대보초 해양공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원관리청(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의 설립 및 기능, 공원구역계획(Zoning plans)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은 공원관리청이 GBRMP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보초 해양공원의 지정, 관리규정 제정 등 지정·관리 정책은 물론 대보초 해양공원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 또는 사람들이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6조 및 제7조). 그리고 동법은 대보초 해양공원의 이용 규제,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호·보존 등을 위하여 대보초 해양공원 내 지역에 대한 구역 계획을 준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2) 지정 현황 및 관리 체계

대보초 해양공원(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은 호주의 북동부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지가 있는 곳이다. 즉, 동 해양공원은

44) 육근형 외(2016), p. 86.

그 면적과 폭이 344,400㎢, 60~250㎞로 약 3,000개 산호초 생태계에서 산호, 어류, 바다거북, 고래 등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45]

〈그림 3-4〉 대보초 해양공원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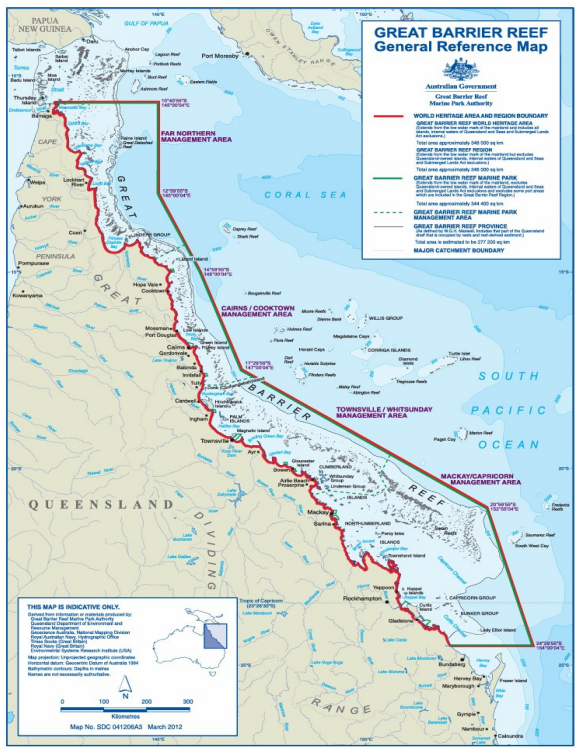

자료: GBRMP, 대보초 전체 현황도(검색일: 2026.7.12.)

공원관리청은 지정된 대보초 해양공원에 대하여 2003년에 구역계획을 수립하고, 개별 관리구역에 대해 8개의 용도지구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대보초 해양공원은 용도구역제를 도입하여 일반용도지구(General Use Zone), 서식지보호지구(Habitat Protection Zone), 보전공원지구(Conservation Park Zone), 완충지구(Buffer Zone), 과학연구지구

45) GBRMP, 대보초 소개(검색일: 2026.7.12.)

(Scientific Research Zone), 해양국립공원지구(Marine National Park Zone), 보존지구(Preservation Zone), 연방도서지구(Commonwealth Islands Zone)로 구분하고 있다.[46]

〈그림 3-5〉 대보초 해양공원의 구역계획 예시(Townsville/Whitsunday 관리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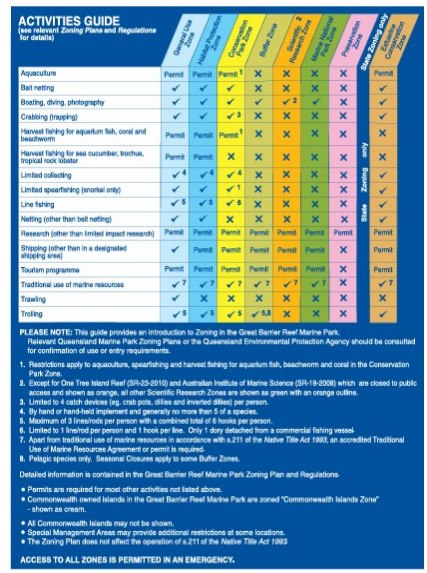

자료: GBRMP, Townsville/Whitsunday Management Area(검색일: 2026.7.12.)

이러한 용도지구는 연방도서지구를 제외하고 일반용도지구, 서식지보호지구, 보전공원지구, 완충지구, 과학연구지구, 해양국립공원지구, 보존지구 순으로 강도를 높여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양식, 관광프로그램, 트롤어업 등 대보초해양공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를 17가지로 설정하고, 행위제한의 강도가 가장 약한 일반용도지구에서부터 가장 강한 보전지구까지 허용행위, 허가행위, 제한행위, 금지행위로 분류하고 있다.[47]

46) 육근형 외(2016), p. 98.
47) 육근형 외(2016), p. 98.

3) 위원회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

우선 위원회(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uthority Board)는 공원관리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보초 해양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48] 즉 위원회는 최소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여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활용 계획과 정책 개발, 산호초 관리에 대한 이용자 참여 촉진, 세계유산 협약과 관련된 호주의 국제적 의무 이행 지원 등 GBRMP법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대보초 해양공원을 관리할 책임을 지고 있다.[49]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공원관리청의 기능과 관련된 분야에서 자격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사회 및 관광업계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퀸즐랜드 주정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1명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보초 해양공원 내 원주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원주민, 관광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자를 각각 1명씩 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50]

이와 함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s)는 산호초(Reef Advisory Committees), 관광(Tourism Reef Advisory Committee), 원주민(Indigenous Reef Advisory Committee), 장기계획 수립(Reef 2050 Advisory Committee)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보초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공원관리청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호초 자문위원회는 공원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운영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관리 정책 및 전략적 방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 산호초 자문위원회는 산호초 전통 소유자 또는 관련 단체 등과의 경험, 지식, 기술, 관계, 네트워크를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고, 공원관리청을 통해 위원회에 대보초 해양공원 관리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8) GBRMP, 대보초 위원회(검색일: 2026.7.12.)
49) GBRMP, 대보초 위원회(검색일: 2026.7.12.)
50) GBRMP, 대보초 위원회(검색일: 2026.7.12.)

2. 미국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51)]

1) 근거 법률 및 제도 개요

미국의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 이하 'FKNMS')는 1990년 11월 16일 제정된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및 보호법」(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 and Protection Act, 공법 제101-605호)에 따라 지정되었다. FKNMS의 관리에는 미국 국립 해양보호구 제도의 근거법인 1972년 「해양보호·연구 및 보호구법」(Marine Protection, Research, and Sanctuaries Act)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FKNMS는 1980년대 석유 시추계획 추진, 수질 악화, 산호초 생태계 쇠퇴, 대형 선박 좌초 사고 등으로 인해 해양환경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정되었다. FKNMS는 해양의 자연 및 문화 자원을 보호하고,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이용을 허용 및 관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및 보호법」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보호구 내 광물, 탄화수소의 탐사, 개발, 생산 금지, 지정된 회피수역에서 선박 운항 제한 등 자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2) 지정 현황 및 관리 체계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FKNMS)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남쪽에서 드라이 토르투가스(Dry Tortugas)까지 이어지는 주변 해역에 위치하며, 드라이 토르투가스 국립공원을 제외한 총 4,539평방마일을 보호

51)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검색일: 2026.7.13.)

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육지와 접하는 경계는 평균 만조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보호구역 내에는 북미 유일의 산호초 장벽(barrier reef), 광범위한 해초지와 맹그로브 군락, 6,000종 이상의 해양생물이 서식하며, 난파선 등 역사와 문화 자원도 분포한다.

〈그림 3-6〉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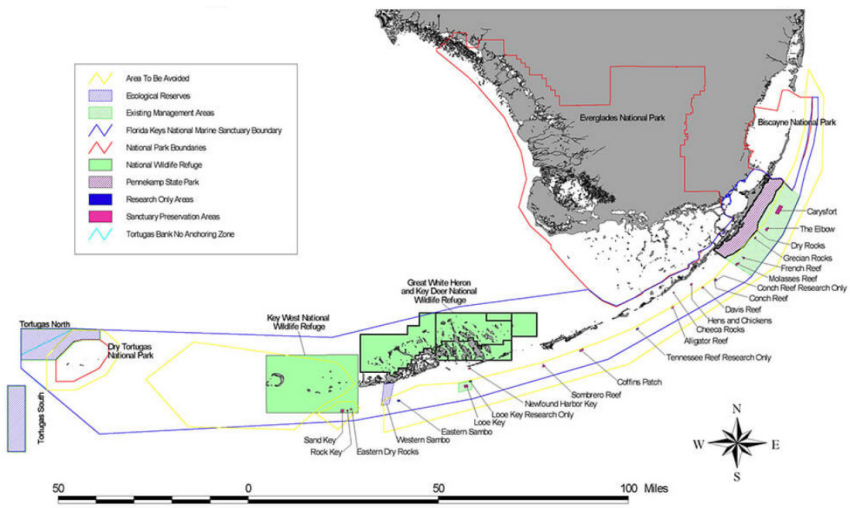

자료: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검색일: 2026.7.13.)

FKNMS는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의 국립해양보호구실(Office of National Marine Sanctuaries)이 총괄 관리하며, 플로리다주와 공동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의 주요 관리 협력 기관은 플로리다 환경보호부(Florida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이며, 보호구역 내 규정 집행은 플로리다 어류·야생동물보전위원회(Florida Fish and Wildlife Conservatin Commission)와 NOAA 법집행국(Office of Law Enforcement)이 협력하여 수행한다.

FKNMS는 해양자원의 생태적 특성과 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구역별로 차등화된 보호 및 관리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1997년 미국 최초로 종합적

인 해양 용도구역 네트워크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개편된 구역계획에서는 보호 목적과 이용 제한 수준에 따라 관리구역(Management Areas), 산호초 보호구역(Sanctuary Preservation Areas), 야생동물관리구역(Wildlife Management Areas), 보전구역(Conservation Areas), 복원구역(Restoration Areas)의 5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7〉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용도구역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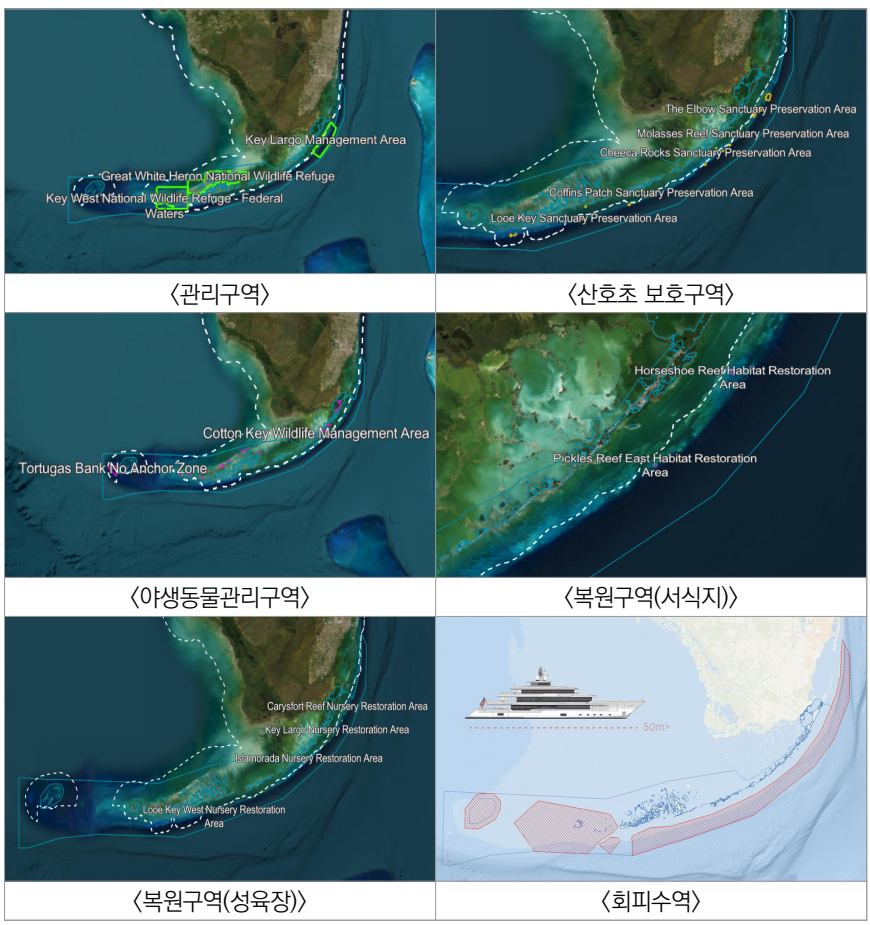

〈관리구역〉 〈산호초 보호구역〉

〈야생동물관리구역〉 〈복원구역(서식지)〉

〈복원구역(성육장)〉 〈회피수역〉

자료: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검색일: 2026.7.13.)

주요 구역별 관리방식을 살펴보면, 관리구역은 기존의 키 라르고(Key Largo)와 루이 키(Looe Key)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호 및 이용 제한을 적용한다. 산호초 보호구역은 17개소에서 낚시와 채집을 제한하며, 그 대신 다이빙, 스노클링 등 비채취 활용은 허용한다. 야생동물관리구역은 44개소이며, 조류, 바다거북 등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선박 속도와 출입을 제한한다. 보전구역은 주요 산란장, 성육장 등 핵심 서식지와 연구지역을 보호하며, 복원구역은 산호 양식과 이식 등 서식지 복원활동을 지원하도록 관리한다. 이와 별도로 4개의 회피수역(Area To Be Avoided, ATBA)을 설정하여 대형 선박의 운항을 제한하고 있다.

〈표 3-7〉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용도구역

구역	내용
관리구역 (Management Areas)	FKNMS 지정 이전에 설정된 키 라르고, 루이 키 등의 구역이며, 보호구 공통 규정 외에 구역별 보호 및 이용 제한 규정 적용
보호구역 (Sanctuary Preservation Areas)	산호초 보호를 위해 노란색 부표로 경계를 표시한 구역으로, 다이빙, 스노클링, 보트 이용은 허용되나, 낚시, 해양생물 채집 및 산호초 훼손 행위는 제한
야생동물관리구역 (Wildlife Management Areas)	조류 서식지와 바다거북 산란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 속도, 동력선 운항, 출입 등을 제한하며, 일부 구역은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과 공동관리
보전구역 (Conservation Areas)	해양생물의 산란장·성육장 등 주요 서식지 보호와 과학연구 지원을 위해 어업, 채취 및 선박 통항 등을 제한하되, 구역별로 일부 활동은 허용
복원구역 (Restoration Areas)	산호 양식 및 이식 등 서식지 복원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으로, 산호 양식장 9개소와 서식지 복원구역 2개소로 구성(총 11개소)

주: NOAA의 2024년 개편 용도구역 체계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검색일: 2026.7.13.)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위원회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

미국의 국립해양보호구는 보호구별로 지역사회 기반의 자문위원회(Sanctuary Advisory Council)를 운영하여 관리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자문위원회는 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홍보, 규제 및 법 집행 등에 관한 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 보호구 관리기관 간 소통 및 협력 창구 역할을 한다.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FKNMS) 자문위원회는 1990년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및 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1992년 2월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2025년 운영규약(Charter)을 기준으로 총 36명으로 구성되며, 의결권이 있는 위원 20명과 의결권이 없는 연방, 주, 지방 정부 관계자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환경보전, 상업 및 레저어업, 다이빙, 보트산업, 관광,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모니터링, 생태계 복원, 수중문화유산,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한다.

자문위원회는 연 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보호구의 관리 및 자원 보전에 관한 의견을 보호구 관리책임자(Sanctuary Superintendent)에게 권고한다. 회의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며, 참석자는 회의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다. 위원들은 소속 분야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구 관리기관에 전달하며, 시민들은 해당 분야 위원에게 직접 의견이나 질의를 전달할 수 있다. 위원 결원 발생 시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위원을 선발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특정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Subcommittee) 또는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그룹에는 위원 외부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정책 결정이나 직접적인 관리 및 집행 권한은 갖지 않으며, 보호구 관리기관에 의견과 권고를 제공하는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3. 그리스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

1) 근거 법률 및 제도 개요

1986년 제정된 그리스의 환경보호기본법은 국립공원을 보호구역의 한 유형으로 구분하며, 그 하위 유형으로 국립해양공원을 두고 있다. 개별 공원의 지정은 이 기본법에 근거한 대통령령으로 이루어지고 세부 관리체계는 2003년 공동장관결정으로 보완되었다.[52]

현재 그리스에는 지정 및 예정되어 있는 국립해양공원이 4개소이다.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 산란지 보호를 위한 자킨토스 국립해양공원과[53] 지중해몽크물범(Mediterranean Monk Seal, *Monachus monachus*) 보호를 위한 알로니소스-북스포라데스 국립해양공원이다.[54] 그리스 정부는 2030년 해양 보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오니아 해(Ionian Sea)와 남부 키클라데스(Southern Cyclades) 지역에 두 개의 새로운 국립해양공원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2025년 7월 발표했다.[55]

2) 지정 현황 및 관리 체계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은 알로니소스 섬과 6개의 작은 섬, 22개 무인도로 구성되며 육지와 해양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보호구역이다. 면적은 2,265㎢이며[56], 어류 약 300종, 조류 80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57] 지정 목적은 생물학·생태학·미학·과학·지형학·교육학 가치가 큰 자연유산이자

52) NECCA(검색일: 2026.7.10.)
53) WWF Greece(검색일: 2026.10.3.)
54) NECCA(검색일: 2026.7.10.)
55) EuroNews(2025.7.21.)(검색일: 2026.10.3.)
56) NECCA(검색일: 2026.7.10.)
57) National Marine Park of Alonissos Northern Sporades, Flora and Fauna(검색일: 2026.7.10.)

귀중한 국가 자연 자원으로서 자연과 경관을 보호·보존·관리하는 것이다.[58]

주요 보호 대상종은 지중해몽크물범이다. 지중해몽크물범은 세계적인 멸종위기 해양포유류로, 전 세계 개체수는 약 400~500마리이며 그중 약 200~250마리가 그리스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 활동과 서식지 감소, 혼획 등으로 인해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59]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보호 노력은 1986년 마그네시아 현(縣)의 결정과 이후 여러 차례 공동장관결정을 거쳐 1992년 대통령령을 통해 해양공원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2003년 공동장관결정에 따라 국립해양공원으로 승격되면서 관리 체계와 관리기구가 마련되었고, 2007년부터는 인력이 배치되며 실질적인 운영이 시작되었다.[60]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은 그리스 국내법뿐만 아니라 EU 서식지지침(92/43/EEC), 야생조류보호지침(79/409/EEC) 등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NATURA 2000 생태 네트워크[61]에 포함되어 있으며, CITES, 바르셀로나, 본 협약 등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도 관리되고 있다.[62]

과거에는 개별 지역 단위 관리기구가 운영을 담당했으나 2020년 자연환경기후변화청(NECCA)이 신설되면서 국가 보호구역 거버넌스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다.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의 관리기구 역시 2022년 NECCA 산하로 통합되었으며, 현재는 NECCA 소속 스포라데스 국립공원 관리단위가 담당하고 있다.[63]

58) NECCA(검색일: 2026.7.10.)
59) National Marine Park of Alonissos Northern Sporades, Monachus monachus(검색일: 2026.7.10.)
60) NECCA(검색일: 2026.7.10.)
61) Natura 2000 네트워크는 유럽 전역에서 육지와 바다에 걸쳐 중요한 보호구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27개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운영
62) NECCA(검색일: 2026.7.10.)

NECCA는 생태계를 보전하고 경제성장·사회통합과 결합하는 지속가능 발전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관리기관의 목표는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비롯해 야생동물·자연경관·문화유산·수산자원을 보호·보존·관리하는 것이며, 지역주민과 전 세계 공동체에 해양공원 안에서 어업·레저·관광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해당 지역의 감시·보호, 환경교육 및 대중 인식 제고, 자원봉사 장려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통합적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64]

관리청은 관리계획 수립·이행, 활동허가 발급, 입장허가 발급 등 포괄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환경 모니터링, 불법 활동 단속, 과학연구 지원, 방문객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상업·관광·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입장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방문하는 사람과 선박은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며, 수익의 30%는 녹색기금으로 할당되어 해양공원을 위해 쓰이고 나머지는 관리기관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65]

공원은 A구역(1,587㎢)과 B구역(678㎢)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A구역은 핵심보호구역이며, B구역은 주민 거주지역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보호 수준이 낮다. 핵심보호구역(A구역)인 피페리 섬과 주변 3해리 해역에는 모든 선박의 접근이 금지되며 연구·관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인간 활동도 금지된다. 과학연구보호구역(A구역)인 이우라 섬과 그 주변 해역은 1~8월에는 섬 주변 400m, 9~10월에는 1해리 내 모든 선박의 접근이 금지되나 연안 상업어선은 예외로 한다. 계절적 출입금지구역(A구역)인 일부 섬과 그 주변 500m 해역은 9~11월 모든 종류의 선박 운항과 상업 어업 활동이 금지된다.[66]

63) NECCA(검색일: 2026.7.10.)
64) 이 문단의 출처는 NECCA(검색일: 2026.7.10.)
65) 이 문단의 출처는 NECCA(검색일: 2026.7.10.)이며, 연안 어업인이나, 영주권자의 소유 선박이 휴양이나 어업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면제

〈그림 3-8〉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 공간 구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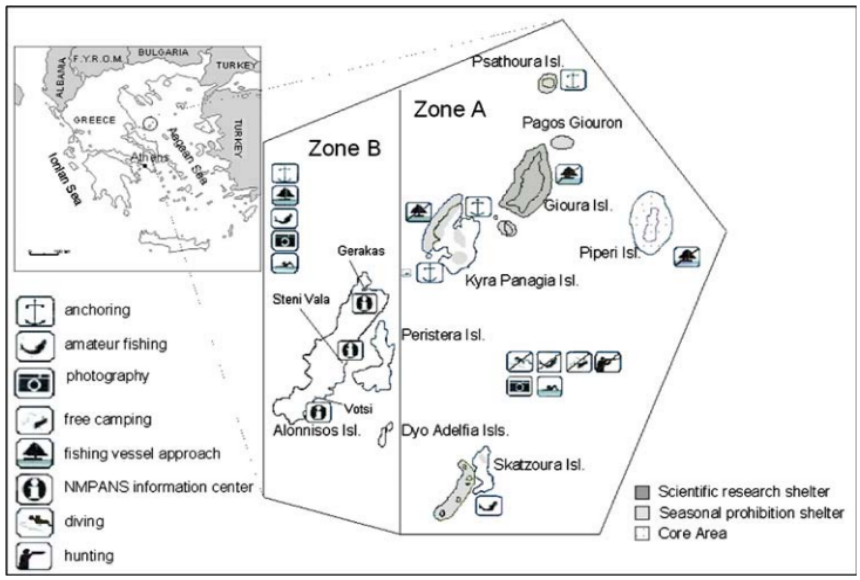

자료: Oikonomou & Dikou(2008), p. 849.

관련 계획으로는 그리스 시민단체인 MOm(지중해몽크물범 연구·보호를 위한 그리스 학회)이 2009년 「지중해몽크물범 보전을 위한 국가전략 및 행동계획(2009-2015)」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는 과거 전략의 이행을 평가하고, 그리스 해역에서 몽크물범의 회복과 장기적 생존을 목표로 네 가지 목표와 행동계획을 제시했다.[67] 별도로 지중해 차원에서는 유엔환경계획(UNEP)/지중해 실행계획(MAP: Mediterranean Action Plan)의 특별보호지역 지역활동센터가 「지중해 몽크물범 보전 지역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전략은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종 보전전략 수립 지침(2008)을 따랐으며, 비전·목표·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68]

66) 이 문단의 출처는 National Marine Park of Alonissos Northern Sporades, Zones of Action(검색일: 2026.7.10.)
67) Notarbartolo di Sciara et al.(2009), p. 2, pp. 42-50.
68) UNEP/MAP-SPA/RAC(2019), pp. 6-8.

지중해 내 서식·출현 정도에 따라 국가들을 지리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룹 A는 현재 번식이 확인된 국가(그리스, 터키, 키프로스 등), 그룹 B는 목격은 되지만 번식은 확인되지 않는 국가(이탈리아, 알바니아, 레바논, 이스라엘 등), 그룹 C는 매우 드물게 목격되거나 목격된 적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목격 사례가 있는 국가(북아프리카 등)이다.[69]

〈그림 3-9〉 지중해몽크물범 지역 계획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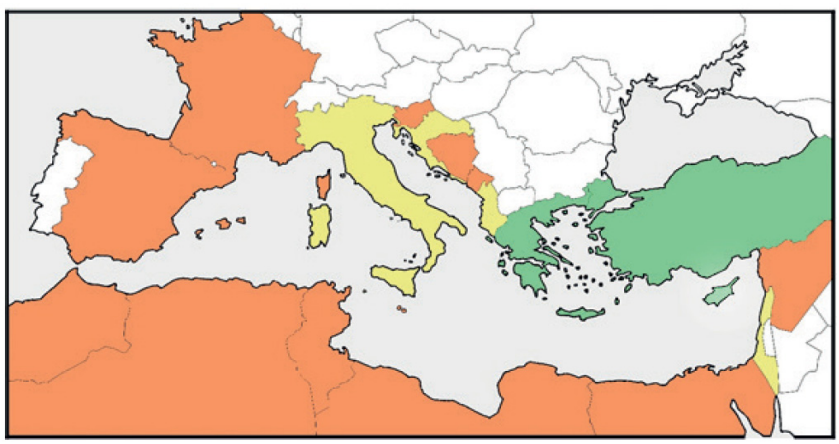

주: 초록색(그룹 A)은 현재 번식이 확인된 국가(그리스, 터키, 키프로스 등); 노란색(그룹 B)은 목격은 되지만 번식은 확인되지 않는 국가(이탈리아, 알바니아, 레바논, 이스라엘 등); 주황색(그룹 C)은 매우 드물게 목격되거나 목격된 적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목격 사례가 있는 국가(북아프리카 등)
자료: UNEP/MAP-SPA/RAC(2019), p. 6.

전략의 비전은 앞으로 20년간 지중해몽크물범의 생태적 회복을 통해 역사적 서식 범위 내 주요 서식지마다 다수의 개체군이 형성되어 생태계와 상호작용하고 인간 문화와도 연결되는 것이다. 주요 목표는 지중해 연안국들이 적절한 국가 정책과 행정 체계를 통해 전략을 실행하고, 몽크물범 자문위원회(MSAC)를 설립하는 것이다. 핵심 보전 조치로는 서식지 보호, 위협 요소 제거, 모니터링 및 연구, 역량강화 등을 들 수 있다.[70]

69) 이 문단의 출처는 UNEP/MAP-SPA/RAC(2019), pp. 7-19.

3) 위원회 및 협력 거버넌스 운영

NECCA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지역 관리위원회 운영하면서 NGO와 협력하고 항만당국과 불법 활동 단속을 공조하고 있다. 지역에는 여러 NGO가 활동 중이다.

지중해몽크물범 연구·보호학회(MOm)는 지중해몽크물범을 연구하고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환경단체로, 물범 구조·재활, 서식지 보호·연구, 인식 개선 및 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71]

탈라사 재단(Thalassa Foundation)은 교육과 정보 활동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감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테티스(Tethys) 연구소는 1991년 이오니안 돌고래 프로젝트(Ionian Dolphin Project)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돌고래와 지중해몽크물범을 연구하는 비영리 프로그램이다. 2012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중해몽크물범 사진 식별 카탈로그를 제작·관리하고 있다.[72]

이 외에도 대학, 공공기관,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관리와 발전 과정에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70) UNEP/MAP-SPA/RAC(2019), p. 6.
71) MOm(검색일: 2026.7.10.)
72) 이 문단의 출처는 Thalassa Foundation(검색일: 2026.7.10.)

제3절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를 종합한 결과, 국가정원, 국립공원, 국가도시공원 및 해외 해양공원은 제도의 목적과 관리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중장기 계획, 관리주체 간 역할분담, 구역별 공간관리,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관리·운영체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개별 공원의 관리를 연계하는 계획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국립공원은 자연공원 기본계획과 공원계획을 통해 중장기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도시공원 역시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에 지정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별도의 법정 계획체계가 없어 2025년 수립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공원별 특성과 관리수요를 반영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을 고려한 관리·운영체계 정립이 요구된다. 국가정원은 국가가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정원을 운영하며, 국립공원은 국가의 정책 및 계획 아래 국립공원공단이 현장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해외 해양공원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또는 전문 관리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해 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역시 국가 차원의 정책 총괄과 지역의 현장 관리기능을 구분하고, 관리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구역별 공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미국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그리스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은 생태적 가치와 이용 특성에 따라 관리구역을 설정하고, 보호수준과 이용행위를 차등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해양생태공원도 기존 해양보호구역과 연안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변 해역과 육역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핵심적인 생태공간의 보전수준을 확보하고, 주변지역에서는 생태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국내외 사례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이해관계자 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 전문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공원 관리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어업인 등 다양한 주체가 관련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 조정과 지역 단위의 관리·협의를 연계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또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일회성 의견수렴에 그치지 않고 계획 수립부터 사업 이행과 관리과정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주요 관리·운영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민 중심의 지원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주민 소득 및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외 해양공원에서도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면서 관광, 어업, 교육 등 지역의 이용활동을 관리체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해양생태공원도 시설 조성에 치중하기보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생태관광과 교육 및 체험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활성화하고, 생태계 보전의 혜택이 지역사회와 공유될 수 있는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리하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체계, 관리주체별 역할분담, 구역별 공간관리, 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상생이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존 보호지역과의 관계 및 공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관리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정과 시설 조성 중심의 제도를 넘어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지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기본방향이 될 수 있다.

〈표 3-8〉 국가해양생태공원 유사 공원 및 정원 개념 비교

구분	국가정원	국립공원	국가도시공원	국가해양생태 공원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미국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 보호구	그리스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
근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수목원정원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대보초해양공원법 (GBRMP Act 1975)	「국립해양보호구법」(NMSA),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 보호구 및 보호법」	환경보호기본법 및 대통령령·공동장관 결정
개념 및 목적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	국립공원 :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환경·생물다양성·자연유산 보호·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자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인간 이용 허용	자연·경관 및 멸종위기종 등의 보호·보존·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
구분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 정원 등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	-	-	-	-
관리 주체	개별 지방자치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공원관리청	해양수산부, 개별 지방자치단체	대보초 해양공원 관리청 (GBRMPA)	NOAA와 플로리다주 환경보호부 공동	자연환경기후변화청(NECCA) 산하 관리단위
지정 상황	순천만 국가정원 (92.6ha, 2015.9.), 태화강 국가정원	국립공원 24개소, 약 6,955㎢	국가도시공원은 아직 지정된 곳이 없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 중	4개소 지정 (2025.12.)	344,400㎢	약 3,800제곱마일에서 관리계획 개정 후 4,539제곱마일로 확대	2,265㎢

구분	국가정원	국립공원	국가도시공원	국가해양생태 공원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미국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 보호구	그리스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
	(83.5ha, 2019.7. 지정)						
공간 관리	-	공원구역 내 용도지구	-	핵심보전, 완충, 지속가능이용구역	8개 용도지구에 따른 차등 관리	보호 강도가 다른 용도구역에 따른 차등 관리	A·B구역 및 핵심보호·과학연구보호·계절적 출입금지구역 등 차등 관리
위원회·거버넌스	지자체별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위원회,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중앙도시공원위원회가 있으나 지정, 예산 등 심의기구로 국가-지자체 간 협력채널은 부재	국가해양생태공원 협의회	관리청 위원회 및 분야별 자문위원회	보호구 자문위원회(SAC), 실무그룹·소위원회	NECCA 전문가 자문위원회, 지역 관리위원회, NGO 등과 협력
계획	정원진흥 기본계획	자연공원 기본계획, 국립공원 계획	신설되는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은 지정만 관여하며 관리내용은 부재	2025년 지정·운영 추진전략은 있으나 공원 전용 법정 기본·관리계획 부재	구역관리 계획 (zoning plan)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5년 이내 주기 검토·개정	통합적·과학적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관리기관 목표로 제시
비용·지원	중앙정부 지원	국비, 국립공원공단	국가가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 개정 (2026.8.27. 시행예정)	국고보조 (해양생태계법 제54조)	중앙정부 지원	-	입장권 수익 활용

자료: 제3장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0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제1절 제도 개선 기본방향

1. 기본원칙 및 제도적 성격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해양생태계의 건강성과 생태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범위에서 교육·체험, 생태관광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편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해양보호구역과 연안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하면서 주변 해역과 육역까지 연계하여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기존 해양보호구역은 개별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행위제한, 관리계획 및 보전사업 등을 시행하는 반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보호지역의 보전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사회 참여를 연계하는 광역적 공간관리체계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관리계획,

관리사업, 협력 거버넌스 및 지원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관리방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해양보호구역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호수준을 완화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존 보호지역의 보전가치를 유지하면서 주변지역과의 생태적·사회경제적 연계를 확대하는 포괄적 관리체계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표 4-1〉 해양보호구역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 특성 비교

구분	해양보호구역(MPA)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 목적	해양생태계, 보호생물 및 해양경관의 보전	보전 및 복원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가치 창출
공간 단위	개별 법정 보호지역	기존 MPA와 인근 해역·육역을 포괄하는 광역적 공간
관리 수단	행위제한, 관리계획 및 보전사업 중심	공간관리, 관리사업, 협력 거버넌스 및 지원수단 연계
관리 대상	해양생태계, 생물종, 해양경관 등	해양생태계, 해양자산 및 주변지역의 이용활동
이용	보호목적에 부합하는 이용 허용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
지역사회	보호지역 관리 참여 및 주민지원 대상	공동 관리·운영 참여 및 지역상생의 주요 주체
공간 관리	개별 보호지역 단위의 관리	기존 보호지역과 주변지역의 연계·통합관리
정책적 역할	해양생태계 보전의 핵심 수단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연계하는 광역적 관리체계

자료: 저자 작성

2. 관리 및 운영 기본방향

앞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책 여건과 관리·운영상의 한계, 국내외 유사제도의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보호지역과의 관계 정립, 관리주체 간 역할분담, 법정 계획체계, 관리사업의 실행수단, 재정 및 전문역량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그림 4-1〉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운영 기본방향



자료: 저자 작성

1) 기존 보호지역 연계형 광역 공간관리체계 구축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해양보호구역 및 연안습지보호지역 등을 포함하여 지정되며, 일부 공원은 자연공원, 람사르습지, 세계자연유산 등 다양한 보호·관리지역과 중첩 또는 인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공원에 서로 다른 법률과 계획, 관리주체가 적용될 수 있어 개별 보호지역 단위의 관리만으로는 공원 전체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 보호지역을 생태적 핵심공간으로 유지하면서 주변 해역과

육역을 연계하는 광역적 공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개별 보호지역의 보호목적과 관리수준은 유지하되, 핵심·완충·지속가능이용구역의 기능에 따라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보호·관리제도와 계획을 상호 연계 및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2)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협력 거버넌스 확립

현행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 권한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나, 공원별 현안과 지역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지역 단위의 협력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총괄과 전문지원 기능을 지역의 현장 관리·운영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단위 협의체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원의 계획 수립과 관리·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중장기 계획 기반의 체계적 공원관리

현재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과 운영에 관한 정책적 추진방향은 마련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개별 공원의 관리를 연계하는 법정 계획체계는 부재하다. 이에 따라 공원별 관리목표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국가 정책을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공통적인 관리원칙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별 생태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법정 계획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계획에 따라 보전·복원, 조사·모니터링, 지속가능한 이용 및 주민참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성과를 평가하여 차기 계획에 환류하는 체계적인 공원관리 방식을 정립해야 한다.

4) 관리사업의 집행력 확보 및 지역상생 기반 확충

현행 제도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기본적인 관리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정 이후 필요한 관리사업의 시행 주체와 집행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원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수용성을 높이고, 보전의 편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보전·복원, 조사·연구, 교육·체험 등 공원 관리사업의 시행 근거와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리계획의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공원의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참여하고 그 편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 및 지역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안정적 재원 조달 및 전문 관리기반 강화

국가해양생태공원은 보전·복원, 조사·모니터링, 교육·홍보, 지속가능한 이용 및 주민지원 등 다양한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한계가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상응하는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재원조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공원별 관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적인 조사·모니터링과 관리계획 수립·이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원별 관리수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상의 5대 기본방향은 각각 독립적인 관리원칙이 아니라,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상호 연계되어 작동해야 하는 핵심 요소이다. 즉, 기존 보호지역을 기반으로 공원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주체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관리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재정과 전문역량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절에서는 공간관리 및 지정체계, 협력 거버넌스, 법정계획체계, 관리사업 및 지원수단 등에 관한 구체적인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도 개선방안의 현장 적용을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과 협의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절차를 구체화한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제2절 제도 개선방안

1.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제43조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제43조의3) 2개의 조문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하는 「해양생태계법」의 핵심제도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이 9개의 조문이 새롭게 개정되어야 하므로 별개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4-2〉 국가해양생태공원 법·제도 개선 관련 해양생태계법 체계 변경

현행	개정안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제43조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삭제〉
제43조의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삭제〉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관리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관리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 방지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신설〉	**제6장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신설〉	제48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8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변경 및 해제) 제48조의4(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제48조의5(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의6(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의 수립) 제48조의7(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의 시행 등) 제48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48조의9(토지 등의 수용) 제48조의10(핵심구역의 금지행위) 제48조의11(완충구역 등의 행위허가) 제48조의12(주민지원사업)

자료: 해양생태계법(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변경·해제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구역 및 유형

우선 「해양생태계법」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립공원, 국가정원, 국가도시공원 등 다른 유사제도와 달리 지정대상을 해양보호구역과 습지보호지역, 그 인근 해역과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차 UN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는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상·해양의 30퍼센트 이상을 보호지역과 보호지역 외의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으로 보전·관리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구역을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은 물론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까지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법」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구역을 핵심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2025년 12월에 발표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구역을 핵심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나, 「해양생태계법」에서는 이러한 구역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비한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표 4-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구역 및 유형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현행	개정안
2.「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2.「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신설〉	3. 그 밖에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해역·지역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경관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핵심구역: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지속가능이용구역: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육역으로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해양생태계법(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변경·해제

「해양생태계법」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변경 및 해제와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

제도는 두고 있으나, 지정변경·해제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특히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해제·변경 조문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 이후 여건 변화로 인하여 지정해제·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해양생태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표 4-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변경·해제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어 해양자산의 보전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2. 천재지변, 국방 또는 공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해양자산의 관리 가치가 매우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제48조의2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자료: 해양생태계법(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공원자원 조사

「해양생태계법」은 정부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자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즉,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지정 이후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공원 내 자원 변

화 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해양경관 등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5〉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공원자원 조사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의4(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1.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해양경관 등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자료 : 해양생태계법(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해양생태계법」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시·도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각각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는 「해양생태계법」 제43조의3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은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원장은 물론 위원의 수, 범위 등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과 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등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지역협의회는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이므로 「해양생태계법」에서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표 4-6〉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및 지역협의회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8조의4(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1.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④ 시·도지사는 관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료: 해양생태계법(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3)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해양생태계법」은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관리하는 정책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 제도가 필요하다. 즉,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 및 국립공원 계획 결정을 통해,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국가가 지정한 공원 또는 정원을 관리하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기본방향과 목표가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이하 '공원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위 공원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사업계획이 담긴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이하 '공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4-7〉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5(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이하 '공원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원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현황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기본방향과 목표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전략

현행	개정안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협력 거버넌스 5. 그 밖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공원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48조의6(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원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이하 '공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 및 이용 현황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목표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사업계획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이용시설 설치 계획 5. 그 밖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협의회와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해양생태계법(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4)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 시행

「해양생태계법」은 인·허가 의제, 토지 등의 수용, 주민지원사업 등 공원관리청이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실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원관리사업의 시행 주체인 공원관리청을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의제, 토지 등의 수용 제도와 함께 국가해양생태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표 4-8〉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 시행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7(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의 시행 등)** ① 공원관리계획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사업(이하 '공원관리사업'이라 한다) 시행과 보전·이용시설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48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관리청이 제48조의7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현행	개정안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6.「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0.「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2.「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3.「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제48조의9(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관리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3조의6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현행	개정안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제48조의1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가해양생태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해양생태계법(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5) 국가해양생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

「해양생태계법」은 국가해양생태공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규제를 위하여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 조문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핵심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므로 핵심구역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여 금지행위로서 규제하는 한편,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은 공원관리청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행위로서 통제하는 것이다.

〈표 4-9〉 국가해양생태공원에서의 금지행위 및 행위허가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10(핵심구역의 금지행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핵심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48조의11(완충구역 등의 행위허가)** 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료: 해양생태계법(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3) 기타 법·제도 개선사항

「해양생태계법」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재원확보와 함께 전문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국고보조, 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개정이 요구된다. 즉, 재원확보 측면에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그 용도를 국가해양생태공원관리계획의 시행, 토지 등의 수용, 국가해양생태공원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고보조의 경우 국가해양생태공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국가해양생태공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해양생태공원관리사업 시행, 주민지원사업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공원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업무위탁 규정을 통해 해양환경공단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4-10〉 기타 법·제도 개선사항 관련 해양생태계법령 개정안

현행	개정안
법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행 4.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5.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6.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7.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과 제48조의6에 따른 으로 수정해주세요 국가해양생태공원관리계획의 시행 4.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와 제48조의9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5.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6.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과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 시설의 설치·운영 7.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	개정안
법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법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의2.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의3. 제48조의6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의4. 제48조의7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관리사업 시행 3의5. 제48조의1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영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채취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포획·채취 3.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측량 및 관찰 3의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4.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시행	**영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채취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포획·채취 3.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측량 및 관찰 3의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4.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시행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의 시행

자료: 해양생태계법·시행령(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국가해양생태공원별 관리계획 수립 지침 개발

1) 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수립방향

해양보호구역은 이미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순천만, 보성벌교, 무안갯벌, 신안갯벌 등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구성하는 개별 해양보호구역 역시 각자의 관리계획 체계를 갖추고 운영 중이다(표 4-11 참조).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별도의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 필요한 이유는 계획 수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해양보호구역이 근본적으로 성격과 공간적 범위를 달리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표 4-11〉 국가해양생태공원(4개소)과 해양보호구역 면적 비교

단위: ㎢

국가해양생태공원	가로림만 (서산·태안)	호미반도	여자만(보성·순천)	신안·무안
핵심구역	92.04	71.77	38.852	1,015.937
완충구역	13.61	50.38	20.96	200.71
지속가능이용구역	41.40	17.20	25.06	568.828
총 면적	147.05	139.35	84.872	1,785.475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	92.04	71.77	순천만 28, 보성벌교 33.92, 합 61.92	신안 1,100.86, 무안 113.34, 합 1,214.2
해당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상황	2023~2027	2023~2027 (확대 전 수립)	순천만 2024~2028 보성벌교 2020~2024 (2026 발주)	신안 2025~2029, 무안 2022~2026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5.12.2.)(검색일: 2026.7.6.); 해양환경정보포털(MEIS)(검색일: 2026.7.6.)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은 핵심구역인 해양보호구역뿐 아니라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을 포함하여 해양보호구역보다 공간적 범위가 넓으며, 특히 육상의 배후지역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실제로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을 포함할 경우, 기존 해양보호구역 면적에 비해 늘어나는 공간범위는 여자만의 약 45㎢에서 신안·무안의 약 770㎢에 이르기까지 공원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표 4-11 참조). 이처럼 다루어야 할 공간의 성격과 범위가 확장되는 데다 국가해양생태공원에는 방문자센터, 탐방시설 및 편의시설 등 다양한 건물과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므로 관리계획에는 이러한 시설의 관리·운영, 유지·보수에 특화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달리 공간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시설 조성과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투입계획은 물론 민간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한 협력 및 투자유치 방안까지 포괄하는 계획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격 차이를 고려할 때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계획은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통합하여 하나의 계획으로 수립하기보다는 핵심구역은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그대로 준용하고,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은 현명한 이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시설관리와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되 서로 연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산림청이 운영하는 국가정원 진흥기본계획 체계에서도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실행계획이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73] 국가해양생태공원 역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은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통해 마련하고, 개별 공원의 구

73) 수목원정원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은 5년마다 정원진흥기본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순천시는 5년마다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1937호, 2019. 4. 25. 제정)에 근거하여 진흥계획을 1회 수립했고, 이후 매년 시책을 발표하고 있음

체적인 관리계획은 관할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수립시기는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양생태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에 따라 공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으나 국가정원의 사례처럼 법 개정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근거로 관리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경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본 지침은 조례에 근거한 계획이 향후 법정계획 체계로 원활히 편입되도록 표준적인 구성체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의 관계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은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여 통합적인 공간관리를 구상하더라도 실제로는 두 계획의 수립시기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서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계획을 뒤이어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이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거나 그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반대로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 해당 지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자체를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에 맞추어 수립할 필요는 없으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이미 수립된 국가해양생태공원 계획을 연계하거나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계획은 궁극적으로 이용과 활용의 측면을 주로 다루게 될 것이며, 생태관광이나 활용을 위한 시설과 사업에 관한 계획이 중심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설과 사업 가운데 일부는 보전

의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핵심구역인 해양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4-2〉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의 관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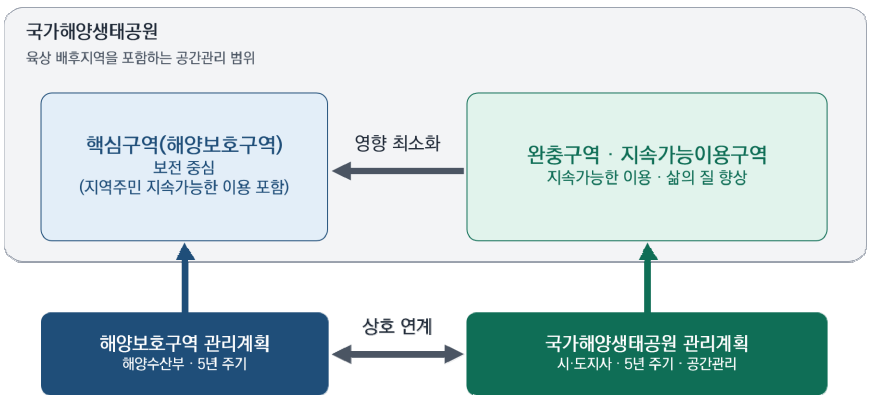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3) 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기본방향

지침은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세부 절차서나 작성 매뉴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이 갖추어야 할 수립주체 절차 포함사항과 표준적인 구성체계를 제시하는 성격을 갖는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의 수립주체는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하고, 수립주기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으로 하여 계획 간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립절차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역협의회와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으로 구성한다.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 및 이용 현황, 관리목표와 관리사업계획,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우선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의 관리·운영, 유지·보수에 관한 계획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투입 및 재원조달 방안, 민간기업의 ESG 활동과 연계한 협력 및 투자유치 방안을 명시적인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지침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뿐 아니라 민간자본의 참여 가능성까지 검토하도록 하여 관리계획이 예산계획으로서도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련 계획이 핵심구역인 해양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표준 목차는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 취하고 있는 서론, 현황 및 여건, 지역계획 및 사례검토, 이전계획 이행평가(제2차 관리계획부터 포함), 관리계획 수립, 성과점검 및 환류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여 시설관리와 재원조달에 관한 장을 신설하고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및 타 국가해양생태공원과의 연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구성과 지침(안)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12〉 국가해양생태공원별 관리계획 구성(안)

장 제목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성격과 적용 범위
제2장 현황 및 여건	• 자연환경 및 생태계 현황 • 인문사회 및 지역경제 현황 • 시설 및 인프라 현황
제3장 이행 평가	• 직전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의 이행실적 및 시사점 (제2차 계획부터 적용하며 최초 수립 시에는 생략)
제4장 관리계획	• 생물다양성 증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연계) • 관리기반 확충 • 인식증진 및 위상제고 • 현명한 이용과 삶의 질 향상
제5장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 시설별 관리·운영, 유지·보수 계획 • 안전관리계획
제6장 재원조달 및 투자유치계획	•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국비·지방비 분담) • 민간기업 ESG 협력 및 투자유치 방안
제7장 협력 및 연계체계	•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연계 • 타 국가해양생태공원과의 네트워크
제8장 성과점검 및 환류계획	• 관리성과 평가 • 차기계획 반영사항

자료: 저자 작성

〈표 4-13〉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 수립지침(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6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이하 "공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공원관리계획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한정된 생태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전·관리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명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이다.

제3조(연계성) 공원관리계획은 핵심구역인 해양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준용하고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이용, 재원조달 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새로 수립함으로써 하나의 해양생태권역을 다루는 계획으로서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 공원관리계획은 생물다양성 보전에 그치지 아니하고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에 조성되는 시설의 관리·운영 및 예산투입·재원조달을 포괄하는 공간관리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5조(지위) 공원관리계획은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가 마련하는 관리 방향과 기준을 수용하여 개별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지향하여야 할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사업계획의 지침적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제6조(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의 관계) 핵심구역에 대해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그대로 준용하며 공원관리계획이 핵심구역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완충구역 및 지속가능이용구역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핵심구역인 해양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장 공원관리계획의 수립범위

제7조(수립대상) ①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공원관리계획을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연도) 공원관리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5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9조(변경) 시·도지사는 관리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수립범위) ① 공원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핵심구역 완충구역 및 지속가능이용구역 전체로 하되 육상의 배후지역을 포함한다.

② 다만 핵심구역에 관한 사항은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을 준용하므로 공원관리계획에서는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핵심구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원관리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1조(내용) 공원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 및 이용 현황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목표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사업계획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유지보수 계획
5.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투입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기본원칙) 공원관리계획은 핵심구역에 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며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에 관한 계획이 핵심구역의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3조(보전과 이용의 조화) 공원관리계획은 생태관광 등 이용·활용을 위한 시설과 사업을 다루되 보전의 맥락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과 사업은 배제하거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반영한다.

제14조(재정 및 민간협력의 반영) 공원관리계획은 사업의 재원조달방안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은 물론 민간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과 연계한 협력 및 투자유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6조(작성 시 유의사항) 공원관리계획의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핵심구역에 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내용상 모순이 없을 것
2. 시설의 관리·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
3. 재원조달방안이 실현가능성을 갖출 것
4. 계획의 근거자료 출처를 명시할 것

제4장 부문별 계획수립기준

제17조(보전 및 이용 현황 분석)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경관 현황
2. 핵심구역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현황
3. 완충구역 및 지속가능이용구역의 토지이용 및 시설 현황
4.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현황

제18조(관리목표) 관리목표는 생물다양성 증진 관리기반 확충, 인식증진 및 위상제고, 현명한 이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4대 전략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제19조(공간구조) 공간구조는 핵심구역, 완충구역, 지속가능이용구역별로 관리방향을 구분하여 설정하되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은 시설 배치와 이용 동선을 중심으로 구체화한다.

제20조(시설관리 및 운영계획) ① 완충구역 및 지속가능이용구역에 조성되는 방문자센터, 탐방시설,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별 관리·운영·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설의 안전관리계획 및 이용객 관리방안을 포함한다.
③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및 운영체계를 제시한다.

제21조(재원조달) ① 사업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예산투입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방안을 제시한다.
② 민간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과 연계한 협력사업 발굴 및 투자유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③ 재원조달방안은 공원관리계획의 목표연도 동안의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실현가능성을 갖추도록 한다.

제5장 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 및 영향 최소화 방안

제22조(핵심구역) 완충구역 및 지속가능이용구역에 관한 계획이 핵심구역인 해양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23조(해양보호구역과의 연계) 핵심구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수립시기가 다른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획을 연계한다.

1.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된 경우 공원관리계획은 그 내용에 부합하도록 수립한다.
2. 공원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된 경우 이후 수립되는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은 공원관리계획을 연계하거나 고려하도록 한다.

제6장 공원관리계획 수립절차

제24조(협의) ① 시·도지사는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회) 시·도지사는 협의를 마친 공원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공고) 시·도지사는 심의를 마친 공원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제출) 시·도지사는 확정된 공원관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저자 작성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해양생태공원별로 관리계획의 체계를 표준화하여 계획 간 비교와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핵심구역의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하나의 해양생태권역이 이원화된 계획으로 인해 관리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국가해양생태공원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가 중요하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기능과 위원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협의회의 역할과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한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였다.

규정안에서는 공원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공원구역 변경, 공원 간 연계·협력사업, 관리사업의 성과평가 및 공원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

정하도록 협의회의 기능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도록 구성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수시회의 개최, 의결정족수, 현지조사 및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운영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실시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 어업인 등 지역사회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위원 구성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반영한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4-14〉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00조의0제0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
2. "공원기본계획"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공원관리계획"이란 공원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관할 공원의 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용도구역 설정 및 공간관리 등을 내용으로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확대·축소 등 공원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 간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원 관리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원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원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공원이 지정된 광역 지방정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4. 해양환경 보전, 생태관광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인근 지역주민으로서 관계 기관·학회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5명 이내의 민간위원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등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국의 업무를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참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않을 것을 협의회에서 의결하거나 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현지조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회의 진행사항 및 심의내용
4. 안건별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자료: 저자 작성

05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정책 여건과 현황 관리 및 운영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국내외 유사 제도의 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해양수산부 정책협의 등을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1장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제도 도입 배경과 정책 추진 경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개념 정립과 지정·조성, 해양보호구역 및 자연공원의 관리, 보호지역 거버넌스와 공간관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이후의 관리·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의 도입이나 신규 지정보다는 '지

정 이후 관리·운영'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실질적인 이행에 필요한 관리

체계와 법·제도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도입 배경과 지정 현황, 관련 법·제도 및 국가전략을 검토하고, 최초 지정된 4개 공원의 공간적 특성과 관리·운영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GIS 중첩분석을 통해 기존 해양보호구역과 연안습지보호지역을 중심으로 핵심구역이 설정되고,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을 통해 주변 해역과 육역으로 관리범위가 확대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부 공원은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자연공원 등 다양한 보호·관리지역과 중첩 또는 인접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계획 간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과 국가해양생태공원 협의회 등을 통해 관리주체 간 역할과 책임의 불명확성, 법정 계획체계 미비,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조사·모니터링 기준 부재 등 현장의 제도 개선 수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공원의 지정과 기본적인 관리 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지정 이후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수단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체계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의 국가정원, 국립공원, 국가도시공원과 국외의 호주 대보초 해양공원, 미국 플로리다 키스 국립해양보호구, 그리스 알로니소스 국립해양공원의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사례에서는 법정계획을 통한 중장기 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 간 역할분담, 관리사업과 재정지원의 제도적 기반 등을 확인하였다. 국외 해양공원에서는 생태계 가치와 이용 특성에 따른 구역별 공간관리, 조사·모니터링에 기반한 관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 등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중장기 계획체계 구축, 관리주체별 역할분담, 구역별 공간관리, 협력 거버넌스 및 지역사회 상생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체계 설계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선 여건 분석과 국내외 사례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토대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운영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① 기존 보호지역 연계형 광역 공간관리체계 구축, ②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협력 거버넌스 확립, ③ 중장기 계획 기반의 체계적 공원관리, ④ 관리사업의 집행력 확보 및 지역상생 기반 확충, ⑤ 안정적 재원조달 및 전문관리기반 강화 등 5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해양생태계법」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공원의 지정 변경·해제와 구역별 관리,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과 공원별 관리계획으로 구성되는 법정 계획체계, 국가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 관리사업 시행과 주민지원, 재정 및 전문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중장기 관리방향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별 관리를 연계하고, 계획에 따른 관리사업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집행수단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별 생태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핵심구역은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연계하고,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은 공원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을 설정하여 기존 보호지역과의 관리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관리계획에 현황 및 여건 분석, 관리사업, 시설관리 및 운영, 재원조달, 협력체계, 성과점검 및 환류 등을 포함하도록 표준적인 구성체계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대표성 강화 등 개선사항을 반영한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종합하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실효성은 공원의 지정 자체보다 지정 이후 보전목표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그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는 데 달려 있다. 특히 공원별 생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른 만큼, 국가 차원의 공통된 관리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유연한 운영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방안은 이러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기초로서, 향후 법령 정비와 공원별 적용 과정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2절 정책제언

1. 정책 추진 기본방향

국가해양생태공원은 2025년 최초 4개소가 지정되고 2026년 제1차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가 개최되면서 제도의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공원별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준비 단계에 있으며, 지정 이후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할 법정 계획, 사업 집행수단, 재정 및 전문지원체계 등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정책은 지정 수요조사와 공원 지정, 거점시설 조성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다. 향후에는 시설 조성과 병행하여 조사·모니터링, 보전·복원, 교육·체험 및 지역상생 등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 조성 이후에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보다는 보전목표와 관리원칙을 사전에 정립하여, 시설 중심의 이용에 치우치지 않

고 '보전을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기본원칙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와 현행 제도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구분하여,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 착수하고 법령 정비와 병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우선 최초 지정된 4개 공원을 대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의 시범적용, 지역협의회 구성 준비, 조사·모니터링 기준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초기 운영 경험을 토대로 향후 신규 공원에 적용할 관리모델을 정립하고, 그 성과와 개선사항을 국가 기본계획 및 관련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제4장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방안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단계별 추진과제 이행방향을 제언하였다.

2. 단계별 추진 로드맵

1) 1단계: 법·제도 기반 정비

단기적으로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이후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해양생태계법」에 제6장의2를 신설하여 공원의 지정·변경·해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관리사업, 행위제한,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부담금의 용도와 국고보조 범위를 확대하고, 계획 수립의 세부사항과 절차,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구체적인 집행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 개정에 앞서 현행 제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관리·운영 기반도 마련

해야 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는 본 연구에서 마련한 구성·운영 규정 수정(안)을 토대로 운영기준을 보완하고, 지역 시민단체와 어업인 등 현장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별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어업인,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계를 마련하여 향후 법정 지역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국가해양생태공원종합조사 및 해양보호구역 조사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원별 해양생태계 및 이용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자료가 부족한 항목을 중심으로 보완조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공원 간 비교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공통 조사 항목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공원별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준비 과정에서도 시설 조성뿐 아니라 완공 이후 필요한 운영조직과 인력, 운영프로그램 및 소요재원 등을 함께 검토하여 향후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토대로 「해양생태계법」 개정 이후에는 제1차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중장기 관리목표와 추진전략, 공원 간 연계·협력 및 국가 차원의 지원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공원별 관리계획의 기본방향과 공통적인 관리원칙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2) 2단계: 계획체계 정착 및 관리사업 본격화

중기적으로는 국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공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관할 시·도지사는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공원별 제1차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공원별 생태적,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목표와 세부 사업, 추진주체 및 소요재원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 마련한 「국

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 수립 지침(안)」을 활용하여 공원별 계획의 체계와 내용에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핵심구역에 해당하는 기존 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과 계획기간 및 관리내용을 연계·조정해야 한다.

공원별 관리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단위의 협력 거버넌스도 정착시켜야 한다. 지역협의회는 관련 시·도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고, 관리계획 수립 과정의 의견수렴뿐 아니라 계획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안의 논의와 이해관계 조정 등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에서 제기된 주요 안건을 국가협의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 간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공원별 관리사업은 관리계획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모니터링, 보전·복원, 시설관리, 교육·체험, 생태관광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원별 관리계획에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단년도 사업 중심의 운영을 보완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기존 전문기관의 기능을 활용한 업무위탁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원별 관리수요와 행정 및 전문역량을 고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에 국가해양생태공원에 관한 별도의 조사부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공원별 해양생태계 현황과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공원별 관리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과 관리성과 평가에 활용하고, 생태계 보전상태와 이용관리, 지역사회 참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항목과 기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통합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원별 특성화 전략 및 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대국민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3) 3단계: 성과평가·환류 및 제도 고도화

장기적으로는 공원별 관리 및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제도 개선에 환류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원별 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기간 종료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차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여러 공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와 개선수요는 국가 기본계획의 점검 및 관련 법·제도 정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사업의 추진실적뿐 아니라 생태계 보전상태와 지속가능한 이용, 지역사회 참여 등 실질적인 관리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아울러 최초 지정된 4개 공원의 관리 경험과 운영성과를 토대로 신규 공원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기존 지정 신청지역 중 미지정 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리 경험과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주민과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협력적 관리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공원별 관리사업과 지원체계의 운영성과를 검토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과 전문 관리역량을 높이고, 민간협력 등을 통한 보완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적인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목표와의 연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30by30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보호구역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법정 보호지역과의 공간적 중복 여부 및 OECM 인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성과가 국가 차

원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실적과 적절하게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5-1〉 국가해양생태공원 단계별 추진 로드맵(안)

추진 분야	[1단계] 제도 기반 정비	[2단계] 계획체계 정착 및 관리사업 본격화	[3단계] 성과평가·환류 및 제도 고도화
법·제도	「해양생태계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 추진	지역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시·도 조례 등 관련 규정 마련	관리성과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 및 신규 지정기준 고도화
계획 체계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수립	공원별 제1차 관리계획 수립·시행	관리계획 이행성과 평가 및 차기 계획 수립, 국가 기본계획 점검·환류
협력 거버넌스	국가협의회 운영규정 보완 및 지역 이해관계자 협의기반 마련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및 국가협의회 연계	공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관리사업, 지역상생	공원별 관리사업 수요 및 조성 이후 운영여건 검토	보전·복원, 교육·체험, 생태관광 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통합 브랜드 정립	공원별 우수 관리사례 공유·확산 및 관리사업 개선
재정·전문지원	재정지원 근거 정비 및 관리·운영 소요재원 검토	공원별 중장기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전문기관 지원체계 마련	재정지원체계 개선 및 전문관리역량 강화
조사·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기존 조사자료 확보 및 보완조사, 공통 조사·항목·방법 마련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와 연계한 공원 조사체계 마련 및 성과평가 기준 구체화	관리성과 평가 및 계획 환류, 30by30, OECM 연계 가능성 검토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은주·이명석(2020),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과정,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4), pp. 85-118.

관계부처합동(2025),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국립공원공단(2026), 2026 국립공원기본통계.

기후에너지환경부(2026), 기후에너지환경백서(2025).

김미주 외(2025),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아연(2024), 생태공원의 조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 방향, 한국조경학회지, 52(1), pp. 71-86.

김재은(2022), 섬과 바다를 기반으로 한 자연공원 관리 방향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례 - , 도서문화, 60, pp. 333-350.

김홍균(2014), 환경법(제3판), 홍문사.

대한민국정부(2025),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박성욱·이주아(2021), 국가해양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국내·외 해양정원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연구, 36(1), pp. 71-88.

박용하·변병설(1999), 환경친화적 국립공원 관리방안 연구: 국립공원 주민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기본연구보고서

산림청(2026), 제3차 정원진흥 기본계획(2026~2030).

안동만 외(2010), 해상·해안 국립공원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국립공원연구지, 1(1), pp. 13-28.

육근형 외(2016), 해상에 설정된 공원구역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정비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봉운·이제이·유예나(2017),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기본계획(안) 구상, 충남연구원.

해양수산부(2023.6.) 국가해양생태공원 추진전략

해양수산부(2024.4.),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해양수산부(2025),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2026), 제1차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

환경부(2022),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국외 문헌

Aburto-Oropeza, O., et al.(2025), Marine Prosperity Areas: a framework for aligning ecological restoration and human well-being using area-based protections, Frontiers in Marine Science, 11, 1491483, DOI: 10.3389/fmars.2024.1491483.

D'Anna, G., et al.(2016), Governance analysis in the Egadi islands marine protected area: a Mediterranean case study, Marine Policy, 71, pp. 301-309.

Day, J. C.(2002), Zoning—lessons from the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Ocean & Coastal Management, 45(2-3), pp. 139-156.

Di Cintio, A., et al.(2023), Avoiding "paper parks": a global literature review on socio economic factors underpinning the effectiveness of marine protected areas, Sustainability, 15(5), 4464, DOI: 10.3390/su15054464.

Douvere, F., & Ehler, C. N.(2011), The importance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in adaptive maritime spatial planning, Journal of Coastal Conservation, 15(2), pp. 305-311.

Edgar, G. J., et al.(2014), Global conservation outcomes depend on marine protecte d areas with five key features, Nature, 506(7487), pp. 216-220.

Grorud-Colvert, K., et al.(2021), The MPA Guide: A framework to achieve global goals for the ocean, Science, 373(6560), DOI: 10.1126/science.abf0861.

Jones, P. J., et al.(2024), Incentive diversity is key to the more effective and equitable governance of marine protected areas, Frontiers in Marine Science, 11, 141 2654, DOI: 10.3389/fmars.2024.1412654.

McCook, L. J., et al.(2010), Adaptive management of the Great Barrier Reef: a globall y significant demonstration of the benefits of networks of marine reserv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43), pp. 18278-18285.

Notarbartolo di Sciara, G. et al.(2009), National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the cons ervation of the Mediterranean monk seal in Greece, 2009–2015: Report on evaluating the past and structuring the future, MOm/Hellenic Society for the Study and Protection of the Mediterranean Monk Seal(Athens).

Oikonomou, Z. S., & Dikou, A.(2008), Integrating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at the National Marine Park of Alonissos, Northern Sporades, Greece: perce ption and practice, Environmental Management, 42(5), pp. 847-866.

Rassweiler, A., et al.(2014), Integrating scientific guidance into marine spatial plan ning,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281(1781), 20132252, DOI: 10.1098/rspb.2013.2252.

Trivourea, M. N., et al.(2011), People and the Mediterranean monk seal (Monachus monachus): A study of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the National Marine Park of Alonissos, Northern Sporades, Greece, Aquatic Mammals, 37(3), pp. 305-318.

UNEP/MAP - SPA/RAC(2019), Regional Strategy for the conservation of Monk Seal in the Mediterranean.

인터넷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12.2.),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in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2025.12.2.)의 별첨 3자료, https://www.mofe.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76006&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검색일: 2026.9.5.)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연공원법 연혁,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6.07.12.)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소개, https://www.knps.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8000342(검색일: 2026.07.12.)

국토교통위원장(2025.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1938/detailRP(검색일: 2026.7.10.)

경향신문(2015.9.5.),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대한민국 대표정원'으로 우뚝, https://www.khan.co.kr/article/201509051813111#ENT(검색일: 2026.7.13.)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5.10.31.), 부산·경남 핵심 환경자산 금정산, 명품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https://niwdc.mce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UO2Su8Wyj4-a7WHwK25Vgmt_UoPLVE2ZC8vAhcjJ.mehome1?pagerOffset=7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98&orgCd=&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boardId=1773110&decorator=(검색일: 2026.7.12.)

부산일보(2026.4.12.), 을숙도·맥도 분리, 낙동강 국가도시공원 첫 지정 도전,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41218302481600 (검색일: 2026.7.10.)

산림청, 정원조성·운영 현황,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cmsId=FC_003660&mn=AR03_07_02_02(검색일: 2026.7.13.)

오마이뉴스(2025.8.6.),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제1호 국가도시공원' 될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54778(검색일: 2026.7.10.)

월간가드닝(2019.12.4.), [2019 가든이슈③] 울산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https://www.gardening.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209(검색일: 2026.7.13.)

전라일보(2025.8.24.), 광주 풍암호수,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만든다, https://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473(검색일: 2026.7.10.)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https://garden.koagi.or.kr/cpage.do(검색일: 2026.7.1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3.6.29.), 해양생태계 통합 관리 위한 '5대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52089&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971&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curren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10&searchValue=%ED%95%B4%EC%96%91%EC%83%9D%ED%83%9C%EC%B6%95+%EA%B4%80%EB%A6%AC%EA%B3%84%ED%9A%8D(검색일: 2026.7.14.)

_____(2025.12.2.),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해양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복합관광 거점 만든다,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3989&menuSeq=971&bbsSeq=10(검색일: 2026.7.6.)

해양환경정보포털(MEIS), 해양보호구역 현황, https://www.meis.go.kr/mes/marineSanctuary/situation.do(검색일: 2026.7.6.)

환경부 보도자료(2023.4.30.), 국립공원, 여의도 12배 면적(36㎢) 확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확정, https://niwdc.mce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BgHl8P3BHvLfDLhYg2jIXxUcFYIR7f67uLsQEux5.mehome1?pagerOffset=297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98&orgCd=&boardMasterId=939&boardCategoryId=&boardId=1597700&decorator=(검색일: 2026.7.12.)

_____(2024.5.3.), 국립공원 명품마을, 팔공산에 2곳 신규 지정, https://www.mcee.go.kr/home/web/newsRead.do;jsessionid=m9i-CX4kMOvYFYSc5NZudOJU4xRLY6uJPSBHO9lV.mehome2?pagerOffset=219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607&orgCd=&condition.fromDate=null&condition.createDeptName=null&condition.inactiveYn=N&condition.code=null&condition.pageIndex=null&cond

ition.toDate=null&condition.deleteYn=N&boardId=1673360&boardMasterId=939(검색일: 2026.7.12.)

EuroNews(2025.7.21.), Greece is creating two new national marine parks to meet 2030 ocean protection targets early, https://www.euronews.com/2025/07/21/greece-is-creating-two-new-national-marine-parks-to-meet-2030-ocean-protection-targets-ear(검색일: 2026.10.3.)

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 https://floridakeys.noaa.gov/(검색일: 2026.7.13.)

GBRMP, 대보초 전체 현황도, https://elibrary.gbrmpa.gov.au/entities/publication/f4341503-0b23-4475-af1e-6ee4993e75dc(검색일: 2026.7.12.)

_____, TownsvilIe/Whitsunday Management Area, https://elibrary.gbrmpa.gov.au/server/api/core/bitstreams/7928d54d-f964-44f2-a526-e0b89b863bbd/content(검색일: 2026.7.12.)

_____, 대보초 위원회, https://www2.gbrmpa.gov.au/about-us/our-board(검색일: 2026.7.12.)

_____, 대보초 소개, https://www.gbrmpa.gov.au/learn/fascinating-facts-about-great-barrier-reef(검색일: 2026.7.12.)

MOm, https://www.mom.gr/home(검색일: 2026.7.10.)

National Marine Park of Alonissos Northern Sporades, Flora and Fauna, https://alonissos-park.gr/?page_id=63&lang=en_US(검색일: 2026.7.10.)

_____, Monachus monachus, https://alonissos-park.gr/en_US/monachus-monachus/?lang=en_US(검색일: 2026.7.10.)

_____, Zones of Action, http://alonissos-park.gr/?page_id=59&lang=en_US(검색일: 2026.7.10.)

NECCA, Management Unit of Sporades National Park, https://necca.gov.gr/en/mdpp/management-unit-of-alonissos-northern-sporades-national-park-and-protected-areas-of-eastern-thessaly/(검색일: 2026.7.10.)

Thalassa Foundation, https://thalassafoundation.com/(검색일: 2026.7.10.)

WWF Greece, https://www.wwf.gr/en/our_work/nature/marine/endangered_species/caretta_caretta_turtle/(검색일: 2026.10.3.)

법령 자료

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 Act 1975(Act No. 63, 2020.6.26.)

국립공원공단법(법률 제21120호, 2025. 11. 11.)

국립공원위원회 운영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51호, 2026. 8.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47호, 2026.3.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39호, 2026.8.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9.18.)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7호, 2026.3.3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전남광주통합특별시순천시조례 제2903호, 2026. 6. 30.)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1937호, 2019. 4. 25.)

울산광역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3251호, 2026. 4. 2.)

자연공원법(법률 제21848호, 2026.7.7.)

자연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1호, 2024.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5호, 2026. 1. 27.)

기타 자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담당 공무원 17인(2026.6.1., 대한민국 오송).

부 록

〈표 부록-1〉 국가해양생태공원 법·제도 개선 관련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3단 비교표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6장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제6장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제6장의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관리
제48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지역 3. 그 밖에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해역·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를 위하여 생태적 특성, 경관	제24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생물자원과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풍부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특별히 보전·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2.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대한 기여가능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이 법 제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3.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운영실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	제37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명칭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위치·면적 및 범위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사유 및 목적 5.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연월일 6. 국가해양생태공원 내 해양보호구역 또는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명칭·위치·면적 및 범위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핵심구역 :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2. 완충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지속가능이용구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육역으로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의 추진실적과 법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대책의 시행실적이 뛰어날 것 4. 그 밖에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법 제48조의2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해역·지역”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해양자산의 생태적·경관적·학술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8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8조의2에 따라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어 해양자산의 보전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2. 천재지변, 국방 또는 공익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해양자산의 관리 가치가 매우 적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에서 현저히 벗어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제48조의2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48조의4(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	제24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 국방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의 고위공무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대상으로 해양생태계, 해양경관 등 공원자원을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별한 조사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관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 공원이 지정된 광역 지방정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3. 다음 각 목의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라.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4. 해양환경 보전, 생태관광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인근 지역주민으로서 관계 기관·학회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5명 이내의 민간위원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⑤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8조의5(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기본계획(이하 '공원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공원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의4(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8의5조제3항제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단계별 지정계획 2. 주민 참여 및 지역협력 증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8조의5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 또는 그에 따른 계획의 변경으로 그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현황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기본방향과 목표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전략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협력 거버넌스 5. 그 밖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공원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원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제24조의5(공원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48의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용도구역 설정 및 공간관리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인근 주민 지원 3.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48조의6(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공원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계획(이하 '공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 및 이용 현황 2.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목표 3.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사업계획 4.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이용시설 설치 계획 5. 그 밖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협의회와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		제37조의3(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법 제48조의6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서식 생물의 증감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의7(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의 시행 등) ① 공원관리계획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사업(이하 '공원관리사업'이라 한다) 시행과 보전·이용시설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4(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4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기본구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8조의8(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 공원관리청이 제48조의7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면허·승인·동의 또는 협의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 등을 받거나 협의를 한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7.「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8.「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9.「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에의 출입허가 10.「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협의 1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12.「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목·죽의 벌채 등의 허가·신고 13.「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8조의9(토지 등의 수용) ① 공원관리청은 공원관리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관리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48조의7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	제24조의6(환매권) ①법 제48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48조의9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은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고시후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결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사업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공원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그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토지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원관리청에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환매권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의10(핵심구역의 금지행위)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핵심구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48조의11(완충구역 등의 행위허가) ①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완충구역과 지속가능이용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제24조의7(해양경관훼손) 법 제48조의11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제37조의5(행위허가 신청 등) ①법 제48조의11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국가해양생태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원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바닷가 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3. 전신주·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행위 4.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 가설 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2.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3. 토지사용승낙서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등본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보전이 필요한 자연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일반인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추가로 해당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의12(주민지원사업) ① 공원관리청은 국가해양생태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임업 및 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의8(주민지원사업) ①법 제48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환경개선사업 :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2. 복리증진사업 : 마을진입로, 교량,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등 교통·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1. 사업목적 2. 사업개요 3. 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인구 4. 재원확보계획 5.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6.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공원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국가해양생태공원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 사업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과 제48조의6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관리계획의 시행 4.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와 제48조의9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5.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6.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과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 시설의 설치·운영 7.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의2.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3의3. 제48조의6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의4. 제48조의7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관리사업 시행 3의5. 제48조의1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7.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9.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10.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채취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포획·채취 3.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측량 및 관찰 3의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4.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시행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 관리사업의 시행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해양생태계법	시행령	시행규칙
	1.「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료: 해양생태계법·시행령·시행규칙(검색일: 2026.07.12.)을 기초로 저자 작성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6년

01	AI 전환을 위한 해양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연구	김성은
02	신수요 대응 특화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예림
03	마이크로데이터 기반 연안공간 이용 진단 모델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이상혁
04	해양 복합이용 관리 방안 연구	염재원
05	TAC 제도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와 해결 방안 연구	심성현
06	양식산업 기술혁신 방안 연구	오서연
07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고등어·오징어를 중심으로-	천성훈
08	타겟형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SEADEX) 개발 연구	강효녕
09	글로벌 물류거점 공공투자 평가 체계 구축 연구	성현정
10	국제해사 영향력 재편에 따른 IMO 대응역량 강화전략 연구	김보람
11	AI 기반 연합형 해사데이터 허브 설계 및 활용방안 연구	박혜리
12	비컨테이너항만의 스마트화 추진 방안 연구	김보경
13	지방관리항 항만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나영
14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적격성 분석방법 개선 연구	김성아
15	신산업 수용을 위한 항만 기능 확대 방안 연구 -법·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안승현
16	인도양 해양 다자협력 강화 방안 연구	전혜은
17	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기금제도 활용 및 개선방안 연구	김무진
18	어촌 산업지원체계 강화 방안 연구	문지원

2025년

01	청색경제 이행지표 개발 및 투자효과 분석	김주현
02	해양문화산업의 지역 경쟁력 진단과 발전전략 연구	이슬기
03	유해·교란 해양생물 지정 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여진
04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김미주
05	해양 복합위협의 실효적 대응 방안 연구	민영훈
06	해양 위성정보 활용 방안 연구	조성진
07	수산업 정책 전주기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	안지은
08	소비자 맞춤형 식품시장 성장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대응 방안 연구	임경희
09	외국인 어선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정명화
10	수산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 연구	박혜진
11	수산물 업사이클링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이남수
12	어촌과 연안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바다생활권 도입방안 연구	박상우
13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김병주
14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류희영
15	그린 암모니아 선박 연료 전환 대응 방안 연구	전서연
16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이다예
17	탄소중립항만 전환을 위한 항만하역장비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이혜령
18	부산항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김근섭
19	재난 · 재해 대비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물류공급망 대응 방안 연구	최나영환
20	국제물류시장 공정경쟁질서 확립 방안 연구	김동환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6년

01	미래세대의 해양수산 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박수진
02	BBNJ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국내정책 개선 연구	박수진
03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법제 기반 연구	최일선
04	어업인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연구	장홍석
05	외국인선원 관련 선원법 개정 연구	안영균
06	항만 개발 위한 매립 방식 개편 연구	김근섭
07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이종필
08	항만기술산업 국산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김보경
09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민영훈
10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김지윤
11	항만 사이버보안 관리 방안 연구용역	이화섭
12	수산물 안전성조사 체계 개선방안 연구	김철현
13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규제 개선방안 연구	이종필
14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	최상균
15	연안선박 및 관공서 등의 현대화 지원방안 연구	고병욱
16	한일 상호입어 중단 영향 분석	심성현
17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	김성은

2025년

01	해양치유시설 조성·운영 제도 개선 연구	이정아
02	국제 해양질서 전환 대응 해양대외전략 기반 연구	박수진
03	유기수산식품 국제 동등성 확보 방안	오서연
04	선원 복지 개선방안 연구 - 선내 급식을 중심으로	허성례
05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연구 - 항만재개발사업 업무 매뉴얼 개선을 중심으로	김세원
06	군소도서국 해양수산 국제협력 방안 수립	전혜은
07	어촌발전특구 도입을 위한 법·제도 연구	박상우
08	해양생태계서비스 활용 방안 연구	정세미
09	해양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육근형
10	비관리청항만개발사업 정보화 정책 방향 연구	이종필
11	해양안보 위협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 선박 이상 행위를 중심으로	민영훈
12	지방관리무역항 보안관리체계 재정립 연구	김가현
13	부산항 터미널 위험물 컨테이너 장치 효율 개선 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	김우선
14	새만금호 수질관리 강화 방안 연구	장원근
15	미 상호주의 대응 수산분야 비관세장벽 영향 연구	이정미
16	수중레저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이정아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26년

01	한국형 해양소양(K-Ocean Literacy) 개념 정립 및 진단 체계 개발 연구	이슬기
02	해양수산업 속보성(Nowcasting) 지표 개발 및 활용체계 연구	김태한
03	기후위기 대응 국제해양규범 이행을 위한 해양정책 개선 방안 연구	김민
04	국내 IUU 어업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정명화
05	수산식품의 지속성장을 위한 펫푸드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양이석
06	양식 수산물 거래 플랫폼 도입 방안 연구	이정필
07	수산물·농산물 Value Chain 기반 폐기율 저감을 위한 식품물류기술 기초연구	조지성
08	선박 좌초자산 리스크 분석 및 친환경 전환 금융지원 정책방안 연구 - IMO 탄소규제에 따른 국적선대 자산가치 하락을 중심으로-	김한나
09	해상풍력 지원부두 수급산정체계 연구	최상균
10	항만배후단지 수요산정 방안 개선 연구	이수영
11	한-북극 경제권 연계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활용 방안 연구	김엄지
12	해양안보 개념 확장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 연구	임병호

2025년

01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플랫폼 활용 제고 방안 연구	김성은
02	동아시아 해양플라스틱 오염 대응 재원 조성 방안	이윤정
03	한-아세안 해양협력 전략적 강화방안 연구	최지연
04	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체계 구축연구	박찬엽
05	해조류 활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조헌주
06	미국 무역환경 변화와 해운·조선산업의 영향 분석 연구	김한나
07	해상운임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이효과 분석	최영재
08	스마트항만 개발 효과 산정 방법론 연구	안승현
09	항만 수급분석 체계화 및 지침 마련 연구	신정훈
10	비컨테이너 부두 하역능력 산정을 위한 적정 점유율 기준 연구	이화섭
11	국가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거점센터 구축연구	조지성
12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중개 플랫폼 모델 개발	권보배
13	미국 이력 추적 의무화에 따른 수산물 수출기업 대응실태 분석 연구	박혜진
14	AI 활용 글로벌 수산이슈 및 무역전망체계 고도화 연구	한기욱
15	섬·어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이상규

수시연구 2026-11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인 쇄 2026년 10월 29일
발 행 2026년 10월 31일

발 행 인 조 정 희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디자인매일(051-467-3337)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정가 15,000원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A Study on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Marine Ecological Parks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 (동삼동)
TEL. 051-797-4800

값 15,000원
93300
9 791168 663510
ISBN 979-11-6866-351-0